

전략연구 2016-13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실태 및 정책 과제

박경철

발 간 사

토종씨앗은 농민의 손에 의해 오랜 시간동안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적응되어온 씨앗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담긴 우리 생명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부는 굶어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고 베갯잇에 베고 죽는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농민은 씨앗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다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양한 품종의 토종씨앗이 재배되고 있었고 그 토종작물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전되었다. 그래서 어릴 적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음식으로 길들진 우리의 미각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업이 산업화, 개방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토종씨앗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개량종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국내외 종자·종묘회사에서 잘 육종된 종자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면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도 점점 잃게 되었다.

이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던 토종씨앗이 최근 들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음식의 서구화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증가와 GMO로 대표되는 식품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도시인들은 안전하면서도 몸에도 좋은 토종음식을 찾기 시작했다. 농민들 또한 농업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종농사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토종씨앗에 대한 농업기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면서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현재 충남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국내외에서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충남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를 통해 충남도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활동들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토종씨앗은 농민의 손에 의해 전통적으로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적응되어온 씨앗으로 지역에 따라 그 품종이 다양하게 유지 및 계승되어 왔다. ‘농부는 굶어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고 베갯잇에 베고 죽는다(農夫餓死 枕厥種子)’, ‘큰 과실은 먹지 않고 남긴다(碩果不食)’는 격언처럼 전통적으로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씨앗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된 현대농업의 발전에 따라 토종씨앗은 사라지고 대신 다국적기업 등이 종자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종자주권 상실과 GMO 등 불안한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토종씨앗의 가치를 알리고 보급하는 단체 간 연계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충남도의 경우, 홍성씨앗도서관이 몇 해 전 문을 열고 지역 내 토착씨앗을 수집 및 보급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여군여성농민회에서도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청도 토종 종자네트워크가 결성이 되어 각 시군을 거점으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간,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따라서 충청도 차원에서도 토종씨앗의 보존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식품안전, 생물종다양성, 생태와 환경, 지역의 가치와 문화 복원,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농산물 등 많은 이유에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충청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2.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1)토종씨앗의 개념 및 가치 규명,

2)충남도내 민·관 영역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3)타 지자체 및 국외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사례 분석, 4)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충청도 각 주체별 역할 및 정책 과제의 제시 등이다.

제2장에서는 토종씨앗 관련 선행 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토종씨앗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관련 문헌은 적은 상태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들어, 토종의 개념과 중요성, 토착지식, GMO, 종자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해 토종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헌을 분석했다. 또한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 및 육성하려는 정책(GSP사업 등)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정책(토종 관련 조례 제정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실제 충청도내에서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민 10명과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 단체 대표 5명에 대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했다. 인터뷰조사 대상 농민은 주로 부여, 공주, 논산, 청양, 홍성의 농민들이고 활동단체는 부여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공주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등이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토종씨앗의 재배 현황,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활동단체의 설립 배경과 활동 현황, 토종농사의 어려움, 그리고 토종씨앗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이다. 이러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충청도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전남도, 제주특별자치시, 괴산군 등이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도의 경우에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특히 경남도는 조례에 관한 시행 규칙까지 마련해 도의 보급대상 품종에 대해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토종씨앗과 관련한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북도와 전남도에서도 토종을 지역의 특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사례는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나누는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는지 알아봤다. 1975년에 설립된 미국 아이오와 주의 비영리시민단체 시드 세이버스 익스체인지(SSE)는 “우리는 씨앗과 식물들을 수집하고, 기르고, 나눔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위험에 처해있는 미국의 정원과 농작물 자원을 보호한다.”를 미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향후 씨앗도서관 등 많은 활동단체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에서는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충남도 차원의 토종씨앗 보존 방안에 관한 과제이고, 둘째는 토종씨앗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이고, 셋째는 이러한 보존과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제도적 틀 마련이다. 다행히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연구와 한계와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 과제와 각각의 세부 정책 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 정책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정책 과제

1) 토종씨앗 보존에 관한 정책 과제

충남도에서 토종씨앗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토종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내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정리이다. 이는 토종씨앗 관련 정책의 기본이다. 토종씨앗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토종씨앗 관련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역 내 어떤 토종자원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토종자원을 수집해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는 매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조사를 하고 이를 보존 및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충남도 토종자원의 보관에 관한 지원이다. 토종자원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수집한 토종자원을 보관하는 것은 더 어렵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과 홍성씨앗도서관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보관 및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이 체계적인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셋째, 정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중인 유전자원은 약 27만여 점이고 그중 토종씨앗(식량, 원예, 특용)은 약 52,182점이다. 이들 토종품종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및 증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의 토종 품종들은 지역에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많은 경우 토종씨앗이 중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와 상품화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 받고 있다. 따라서 토종씨앗의 보존 못지않게 이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상품화 가능 토종씨앗과 그렇지 못한 토종씨앗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토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밀, 콩 등 일부 토종농산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토종농산물은 분리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종농산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토종농사는 재배의 어려움, 상품성 저하 등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어느 정도 규모화도 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수집상의 관심 밖에 있다. 토종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현재 경남도가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충남도의회에서 제정한 [충남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이 소득보전 직불제도 빠진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 시 이러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촉진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산물에 대해 더 애정을 갖고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역마다 비슷한 형태의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은 없다. ‘locality(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지역에서 생

산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뿌리가 있는 토종농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장의 전문매대에서 판매된다면 로컬푸드의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넷째, 교육과 학교급식과 연계한 활동이 필요하다. 토종은 단순히 하나의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풍토를 간직한 자산이다. 또한 같은 품종이라도 토종농산물은 사람마다 그 재배방식이 다르고 그 사연이 다르다. 하나의 토종씨앗 안에 우리 시골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라니 담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토종씨앗과 농산물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이를 학교 텃밭에 심어 재배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토종농산물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자주는 할 수 없지만 학교급식에도 한 달에 한번 등 일정한 기간을 두어 학생들에게도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지역의 농업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 나눔 행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민이 생산한 토종씨앗은 상업적 목적으로는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부여의 토종씨앗축제 외에는 이렇다할 나눔 행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토종씨앗 나눔 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시경관 조성 등 토종농작물의 다양한 쓰임새 개발이다. 토종농산물은 음식으로써의 가치도 있지만 환경과 경관 개선에서도 훌륭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속 학교농 만들기사업>에 베풀며 등 충남지역 토종벼를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과 도시텃밭연구소가 공주시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토종농산물 활용 텃밭 및 경관조성사업은 도시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토종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한 토종마을 조성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는 현재 많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장이 있다. 이들 마을들은 각기 지역적 특색을 가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종씨앗과 농작물을 테마로 한 전문 프로그램은 없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 농촌체험관광과 농촌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및 농산물을 테마로 한 생산, 경관, 가공, 체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농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토종씨앗과 토종농업의 주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비전 제시 및 제도적 틀 마련

이상과 같이 충청도에서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전 제시와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충청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충청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 기관별로 나누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각 시군 토종농사 농업인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충청도토종종자네트워크 모임을 민관협력 협의체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토종씨앗 관련 사업은 먼저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실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충청도내에서 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관계 기관 담당자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이후 충청도가 토종씨앗 및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다. 충청도의회는 2016년 9월 9일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충북도, 제주특별자치시에 이어 여섯 번째로 토종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타 지자체의 조례에 비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범위	4
4. 분석틀 및 흐름도	5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7
1. 선행연구 분석	7
2. 정책동향 분석	10
1) 정부 정책 동향	10
2) 지자체 정책 동향	15
제3장 토종씨앗 보존 실태 및 의견 분석	21
1. 조사 개요	21
2. 토종씨앗 재배 농민 인터뷰 분석	21
1) 재배 농민의 기본 현황	21
2) 토종씨앗에 대한 정의	23
3) 토종씨앗 재배 현황	25
4)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30
5) 토종농산물 판매 현황	34
6) 토종농산물 인증의 필요성	38
7)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40
8)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우선 사항	45
3.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 인터뷰 분석	48
1) 활동단체의 일반 현황	48
2) 영농 및 판매 활동 현황	52

3)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및 추진 시책	56
4)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필요 사항	58
5) 정부 및 각급 지자체의 우선 추진 과제	59
4. 시사점	60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62

1. 국내 사례	62
1) 전국 사례	62
2) 경남도 사례	65
2. 국외 사례	68
1) 미국	68
2) 캐나다: 시드 오브 다이버시티 캐나다(Seed of Diversity Canada, SoDC)	75
3) 영국: 가든 오가닉의 재래종 씨앗도서관 (Garden Organic's Heritage Seed Library, HSL)	77
4) 호주: 시드 세이버스 네트워크(The Seed Savers' Network, SSN)	79
3. 시사점	82

제5장 향후 정책 과제 84

1. 기본 방향	84
2. 정책 과제	85
1) 토종씨앗 보존 및 유지에 관한 정책 과제	85
2)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86
3) 비전 제시 및 제도적 틀 마련	89

제6장 결론 94

1. 연구의 요약	94
2. 결론	95
3. 한계와 향후 과제	96

참고 문헌 98

부 록 99

표 목 차

[표 1-1] 심층인터뷰 조사 내용	4
[표 2-1] 사업단 및 품목 구성(5개 사업단 20개 품목)	12
[표 2-2] 충남도 GSP사업의 품종개발 및 보급 목표	13
[표 2-3] 토종농산물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16
[표 2-4] 토종농산물 관련 각 지자체 조례의 조항 내용	19
[표 2-5] 토종씨앗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의 목적	20
[표 3-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	22
[표 3-2] 토종씨앗에 대한 정의	24
[표 3-3] 토종재배 농민의 영농활동과 토종농사 경력	26
[표 3-4] 토종재배 농민의 전체 농사 면적과 토종농사 면적	26
[표 3-5] 토종농사 비중 및 토지 이용 형태	27
[표 3-6] 토종씨앗 품종 및 재배 면적	28
[표 3-7] 토종씨앗의 구입 경로 및 재배 방식	30
[표 3-8]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33
[표 3-9] 토종농산물의 주요 판매 방식	34
[표 3-10] 토종농산물의 판매 형태	35
[표 3-11] 토종농산물의 브랜드 또는 상표 유무	35
[표 3-12] 일반 농산물에 비해 토종농산물이 가지는 시장적 가치	37
[표 3-13] 토종농산물 인증 필요성 유무	39
[표 2-14] 적합한 토종농산품 인증제도 담당 기관	39
[표 3-15]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41
[표 3-16]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3
[표 3-17]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이유	45
[표 3-18] 중앙정부, 충남도, 각 시군의 우선 추진 사항	47
[표 3-19]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 일반 현황	49
[표 3-20]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 결성의 구체적 배경	51
[표 3-21]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의 영농 현황	53

[표 3-22] 토종농산물 가공 및 판매 활동	55
[표 3-23]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사회 참여 현황	56
[표 3-24] 토종농산물의 향후 전망 및 추진 사업	57
[표 3-25] 토종씨앗 활동 단체의 필요 사항 및 조례의 필요성	58
[표 3-26] 토종씨앗 확대 및 보존 활동 단체의 발전을 위한 각급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59
[표 4-1] 각 지자체별 토종농산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63
[표 4-2] 각 지자체별 중점 보존·육성 대상 토종품종 및 사업 내용	64
[표 5-1] [충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수정·보완안	8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분석틀	5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6
[그림 2-1]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전주)의 농업유전자원 관리 현황	14
[그림 2-2]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충남지역 수집 토종씨앗 현황	15
[그림 3-1] 토종벼와 잡곡을 재배하는 논산 권*옥 씨 농장	29
[그림 3-2] 토종밀과 채소를 재배하는 부여 신*연 씨 농장	29
[그림 3-3] 토종상품 판매의 예(언니네텃밭)	36
[그림 3-4] 시장에서 다소 비싸게 팔리는 재래농산물 가공품	37
[그림 3-5] 공주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과 씨앗도서관	51
[그림 3-6] 홍성씨앗도서관과 채종포	51
[그림 3-7] 자연재배협동조합 회원들이 자연농업 방식으로 재배하는 벼농사 모습 ·	53
[그림 3-8] 홍성씨앗도서관의 작물식재 및 채종 모습	54
[그림 4-1]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66
[그림 4-2] BASIL의 로고	69
[그림 4-3] BASIL의 씨앗 저장 서랍	70
[그림 4-4] BASIL의 씨앗 대여 서식	70
[그림 4-5] SSE의 로고	71
[그림 4-6] SSE의 카탈로그	72
[그림 4-7] Lillian Goldman 방문자 센터에서 판매하는 씨앗들	72
[그림 4-8] SSE가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재래종 토마토들	72
[그림 4-9] PCSL의 로고	73
[그림 4-10] PCSL의 씨앗 관리법	74
[그림 4-11] 피마 카운티 공립도서관 내부에 있는 PCSL의 씨앗 저장 서랍	74
[그림 4-12] SoDC의 로고	75
[그림 4-13] SoDC의 회원 계간지	76
[그림 4-14] Garden Organic의 로고	77
[그림 4-15] HSL 운영방법	78

[그림 4-16] Garden Organic의 HSL팀	78
[그림 4-17] SSN의 로고	79
[그림 4-18] SSN의 정원	81
[그림 4-19] SSN에서 기르는 호박 종류	81
[그림 4-20] SSN에서 기르는 옥수수 종류	81
[그림 4-21] SSN에서 기르는 콩 종류	81
[그림 5-1]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84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토종씨앗은 농민의 손에 의해 전통적으로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적응되어온 씨앗으로 지역에 따라 그 품종이 다양하게 유지 및 계승되어 왔다. ‘농부는 굶어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고 베갯잇에 베고 죽는다(農夫餓死 枕厥種子)’, ‘큰 과실은 먹지 않고 남긴다(碩果不食)’는 격언처럼 전통적으로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씨앗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

또한, 토종씨앗은 지역 고유의 풍토와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 자체적으로도 자신만의 고유한 씨앗을 유지 및 계승해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양한 씨앗들이 보존되어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록 유전자원 가운데 순수한 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원은 49,228점으로 전체 보유자원 중 2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정만철, 2016)

하지만 산업화된 현대농업의 발전에 따라 토종씨앗은 사라지고 대신 다국적기업 등이 종자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종자주권 상실과 GMO 등 불안한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종자산업은 단순히 종자 하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와 건강, 그리고 환경 전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이 글로벌 시장체계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종자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대규모 종자회사들이 미국 등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종자 및 식량주권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은 지금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토종씨앗의 가치를 알리고 보급하는 단체 간 연계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강원 횡성, 평창, 전북 임실, 완주, 충북 괴산, 괴산 등에서는 토종씨앗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종씨앗을 찾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제주, 횡성, 임실, 괴산 등에서는 지역의 토종씨앗 실태조사의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다.(신지연, 2016)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

의 경우,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인 2008년에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종씨앗을 재배할 경우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홍성씨앗도서관은 2015년에 문을 열고 지역 내 토착씨앗을 수집 및 보급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여군여성농민회와 부여토종종자센터에서도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도 토종종자네트워크가 결성이 되어 각 시군을 거점으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간,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토종씨앗의 보존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홍성,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논산 등 지역 차원에서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 관련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토종씨앗 및 관련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도 민·관·연 각 주체별 역할과 정책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내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토종씨앗의 개념 및 가치를 규명한다. 현재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토종씨앗의 개념을 규명하고 토종씨앗이 농업, 생태,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충남도내 민·관 영역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도출이다. 최근 들어 충남도에서도 토종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및 단체들이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인 및 단체들이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경남도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적극적이다. 또한, 전남도, 제주도, 강원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토종씨앗 보존과 육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이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충남도 각 주체별 역할 및 정책 과제 제시이다.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행정 및 연구기관의 지원도 절대적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 행정 및 연구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 차원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민·관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파악해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현장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다.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토종씨앗 관련 문헌연구이다. 토종씨앗과 관련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는 외국의 다양한 토종씨앗 보존 활동 사례 등을 분석했다. 또한 정형화된 자료 이외에도 토종씨앗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토종씨앗 관련 활동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내용도 연구에 참조했다.

두 번째는 토종씨앗 관련 활동가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현장조사이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충남도토종종자네트워크, 홍성씨앗도서관, 부여토종종자네트워크, 부여여성농민회, 우리씨앗협동조합(공주), 자연재배협동조합(홍성) 등 여러 단체에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토종씨앗 보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부여, 논산, 홍성, 공주 등 현장에서 직접 진행됐다.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방법은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개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고, 두 번째 방법은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익단체의 대표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터뷰 방법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등 토종씨앗과 관련한 정부기관과 충남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표 1-1] 심층인터뷰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개인	■개인적 특성: 나이, 경력, 소속 등 ■재배 배경 및 과정 ■재배 품종 및 면적 ■판매 및 소득 현황	■연계 및 사회 참여 활동 ■토종농사의 어려움 ■향후 전망과 계획 ■정책적 지원 방향
단체	■설립 배경 ■참여농가 현황 및 특성 ■재배 품종과 면적 ■토종씨앗 학습 및 조사 활동	■타 조직과의 연계 활동 ■활동상의 어려움 ■향후 계획 ■정책적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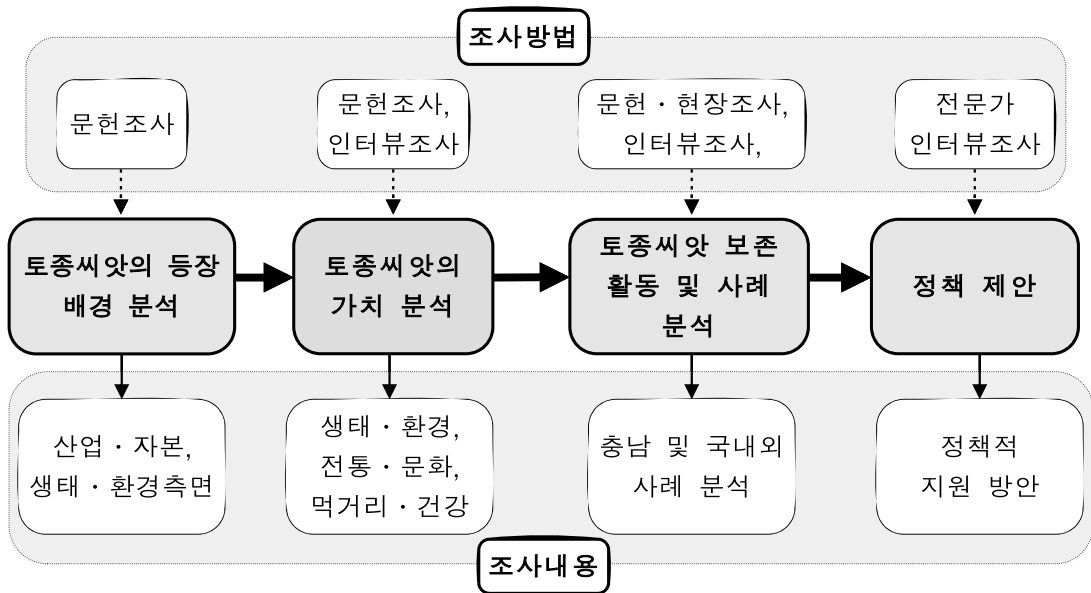
* 관련 기관 담당자 별도 조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충남농업기술원과 산하 시험장,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2)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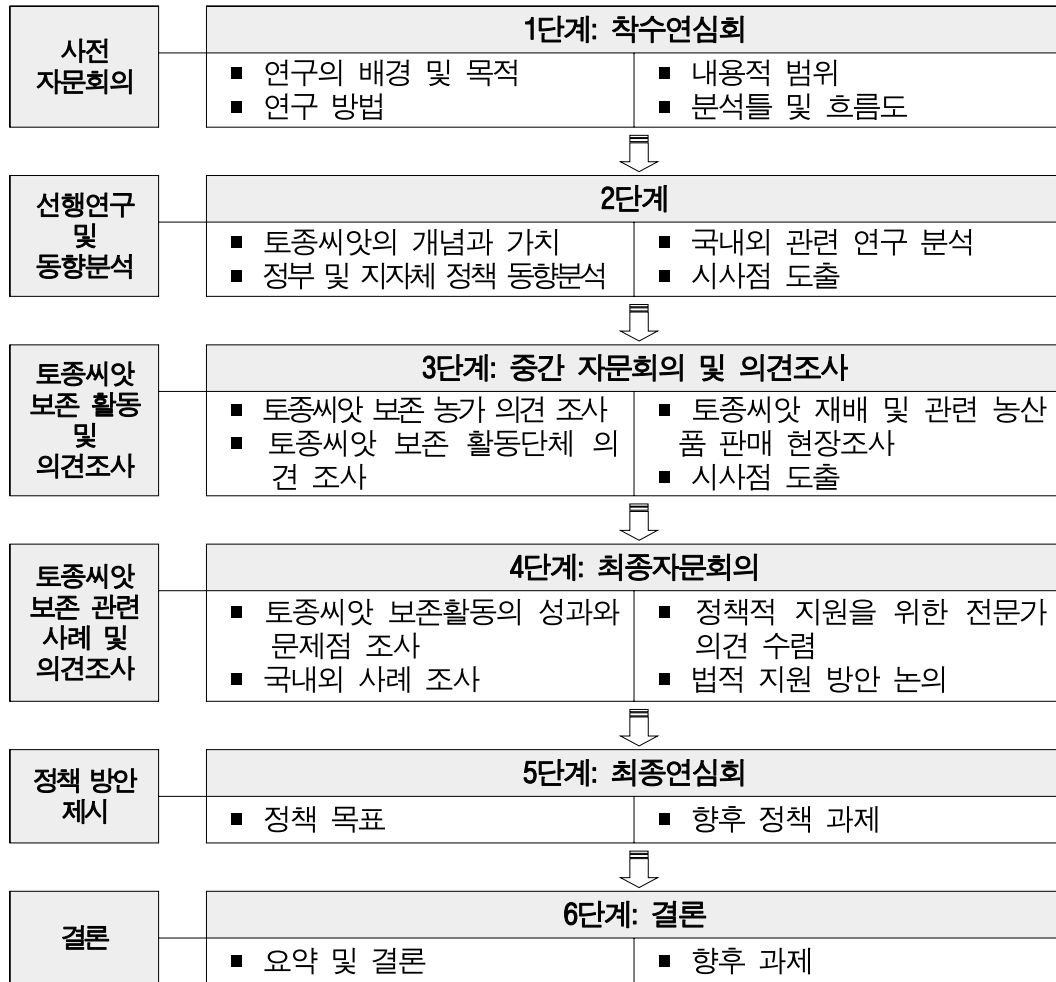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토종에는 크게 식물, 동물, 수산물, 미생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 다양한 품목과 품종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과 품종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농사에 이용되는 토종작물과 이를 재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여기에는 주로 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등이 포함된다.

4. 분석틀 및 흐름도

본 연구는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기부터 시작해 제6장 결론까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며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1-1, 1-2]과 같다.



[그림 1-1] 연구 분석틀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1. 선행연구 분석

그동안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신완식, 2015 등) 토종씨앗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토종씨앗에 관한 연구와 보급 활동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는 안완식 박사를 빼놓을 수 없다. 안완식(2009)은 “토종의 중요성과 보존 활동”에서 토종식물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에서 수억 년을 한국의 기후에 적응되면서 진화되어 내려온 자생식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민들의 손에 의하여 수천 년을 선발되어 내려온 작물재래종이라고 했다. 따라서 토종의 중요성은, 첫째, 토종 식물들은 수천 년을 한민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온 한민족과는 불가분의 자원이고, 둘째, 토종은 민족의 가장 큰 유산이며 생명공학, 신식품육종, 생물학, 연구의 기본 자료인 유전자원이며, 셋째, 토종보존은 지구환경보존의 근본이라고 했다. 하지만 토종작물은 1)보유종이 적고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이 어렵고, 2)종자 보급의 어려움과 종자분쟁사고의 가능성이 크고, 3)판로 및 유통경로가 불확실하며, 4)해외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오랜 동안 정부연구기관에서 근무했고 퇴직한 이후에도 토종씨앗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위해 “씨드림”이라는 공익단체를 설립해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종씨앗을 수집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재래종을 수집 및 기록하고 있으며 토종씨앗나눔축제 등을 통해 토종씨앗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실 토종씨앗은 전통적으로 농부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는 그것이 곧 토종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채 대대로 이어왔다. 하지만 근대화 이후 농업이 산업화, 기계화, 현대화되면서 다수확, 고상품성, 고부가가치를 내세운 수입종자들이 우리나라 농촌을 휩쓸면서 우리의 토종씨앗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렇게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 종자주권이 외국에 넘어가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문과 반성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혹은 토착적 농업지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의 토종씨앗은 현대적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료와 농약을 굳이 많이 쓰지 않더라도 지역의 형질과 풍토에 맞게 잘 자라왔기 때문에 투입이 적더라도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토종씨앗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대대로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효정(2010)은 “토종씨앗지키기”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농업과 여성농민의 삶에 주목하고 과거의 자급자족적 생계 생산에서 필요했던 여성농민들의 지식이 근대화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왔고 그 지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근대화 개발 과정에서 쓸모없는 지식으로 다루어져 왔던 토착지식이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지식으로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토종씨앗지키기’운동과 ‘우리텃밭사업’에 주목하고 여성농민들의 토착지식이 어떠한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에 의해 운동의 중요한 기제로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황경산(2013)은 앞서 김효정(2010)의 연구와는 약간 다르게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적 방안으로 여성농업인의 종자주권운동과 식량주권운동을 소개했다. 그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의 식량주권 운동을 사례로 젠더 불평등과 세계 식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세계 식량 체계는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젠더 불평등한 구조를 심화시키고 여성농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농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식량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식량주권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여농이 식량주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식량주권운동이 젠더 불평등한 세계 식량 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대항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탐색했다.

특히, 전여농은 식량주권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농민들이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기업에게 빼앗긴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은 물론 여성농민의 지혜가 ‘쓸모 있는 지식’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텃밭’이 노동 가치가 없던 사적영역의 공간에서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주목하고 여성농민의 식량주권 실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최근 들어 GMO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식품안전과 토종씨앗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 강순희(2014)는 “한국의 GMO 반대 운동과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사례”에 관한 연구에서 GMO의 문제와 함께 갈수록 사라지는 토종씨앗을 더 늦기 전에 지키기 위한 여성농민들의 활동은 2005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텃밭에서 토종씨앗을 심으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비아 캠페시나와의 교류를 통해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GMO를 상품화하기 위한 개발과 연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자가 채종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 중에 있어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과 정책을 바꿔나가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현재 일부 도에서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했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 정만철(2016)은 “왜 지금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말하는가”에서 토종유전자원은 크게 농업기술적 가치, 생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며 그 중요성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우량형질의 유전자원의 보존이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93.12) 및 FAO 농업식량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04.6)의 발효로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토종종자의 확보는 향후 발생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신식품 및 신기능 신물질 개발의 기본재료 이용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기능성 신물질 및 의학용 신물질을 찾아내고 있다. 셋째, 생태계 보존에 대한 기여이다. 토종자원은 기후와 토양 등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해 분포하면서 다른 동식물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화와 개발 등으로 파괴된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도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종자원은 환경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데도 기여가 클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신지연(2016)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어떻게 보존하고 나눌 것인가에 관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토종종자 지키기 활동”을 통해 토종씨앗은 현장인 농가에서 농민의 손을 통해 대대로 보존되고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자라고 수확하여 채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토종씨앗은 생명의 시작이다. 둘째, 씨앗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할 열쇠이다. 셋째,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넷째, 씨앗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토종씨앗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기후와 땅에서 나고 자라서 우리의 몸에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종씨앗을 지역 차원에서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사라지는 토종씨앗을 찾기 위한 토종씨앗 실태조사 실시, 둘째, 찾아낸 토종씨앗을 늘리기 위한 토종씨앗 채종포 조성, 셋째, 1명의 농민이 1품종 이상의 토종씨앗을 지키는 1토종씨앗지킴이 1토종 지키기 활동 전개, 넷째, 농민에게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 제정, 다섯째, 토종씨앗을 퍼트리기 위한 토종씨앗축제 개최, 여섯째, 씨앗 나눔과 확산의 거점으로써의 토종씨앗도서관 건립, 마지막으로 토종씨앗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종 농민, (여성)농민단체, 귀농단체, 생협, 연구회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토종씨앗에 관한 정보교류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토종씨앗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진(2016)은 토종씨앗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전북도 토종씨앗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국제 식량생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정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자에 대한 가치 역시 단순히 종자 그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출발로서 우리 고유의 종자를 어떻게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통해 먹을거리 생산의 안정적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으로 토종종자의 보호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아울러 토종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종종자조례 제정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전북도 조례 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2. 정책동향 분석

1) 정부 정책 동향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토종씨앗만을 위한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은 없다. 그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자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가치를 증대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이 최근에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종자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종자산업은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종자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약 두 배 가량 성장하였고 그 교역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들어 IT, BT, N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GM종자 시장의 확대, 종자산업의 융복합 등으로 향후 종자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Park and Park, 2013; 신완식, 2015 재인용) 그리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종묘회사들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대부분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2012년부터 신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전 작물로 확대되어 로열티 지급의무 발생 품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품종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신완식,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을 수립해 종자산업의 부흥을 모색했다. 이 계획을 보면, 종자·종축산업 육성은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종기반 구축, 고품질 종자 개발 및 보급 확대 그리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우량 종축 선발 확대를 통한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 사업으로 방사선육종연구센터('10~'13), 민간육종연구단지('11~'15) 등 첨단육종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소육종연구센터 건립('10~'19, 100억 원)을 추진하고 Golden Seed Project(일명 GSP사업, '12~'21)를 통해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2021년까지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종 연구 인프라 구축, 미래 유망종자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14년 사이 종자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13),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14), 생명자원 통합DB 구축('14)을 추진하고 2015~16년 사이 생명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14, 9개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종자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 골든시드프로젝트(일명 GSP사업)

정부의 종자산업 관련 정책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GSP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돼 수출 전략형 10개 품목 종자 개발, 수입대체 10품목 종자 개발을 통해 수출과 종자자급률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그리고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GSP사업의 목적은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강국 도약 및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공동 전략적 종자 개발 R&D 추진('12~'21)이다. 사업 목표는 '21년 수출 2억 달러 달성에 기여하고 수입 대체로 종자 자급률을 향상하는 것이다. 종자자급률 목표('21)는 감귤 10%, 종계 30%, 토마토 70%, 종돈 80%, 김 100%이다. 사업기간은 '12년~'21년(10년)이고 품목별 상세계획·종합계획 등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는 '13년부터 진행됐다. 투자규모는 4,911억 원(정부 3,985 + 민간 926)이고 각 부처별 투자 규모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2,165억 원, 해수부 748억 원, 농진청 972억 원, 산림청 100억 원이다. 각 사업단 및 품목 구성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사업단 및 품목 구성(5개 사업단 20개 품목)

구 분	품 목	프로젝트 수 (세부프로젝트)
5개 사업단	20개	105(225)
채소종자사업단(5) (단장 : 충남대 임용표)	■ 배추, 무, 수박, 고추, 파프리카	39(87)
원예종자사업단(6) (순천대 노일섭)	■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34(66)
수산종자사업단(4) (국립수산과학원 김성연)	■ 바리과, 넙치, 전복, 김	10(28)
식량종자사업단(3) (국립식량과학원 최임수)	■ 벼, 감자, 옥수수	10(26)
종 축 사 업 단(2) (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 돼지, 닭	12(18)

* 수출대상품목(10) : 고추, 배추, 무, 수박, 벼, 감자, 옥수수, 넙치, 전복, 바리과

* 수입대체품목(10) :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파프리카, 백합, 감귤, 돼지, 닭, 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5월 13일자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보도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5월 13일자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임.

정부의 GSP사업에 맞춰 충남도에서도 충남형 GSP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농업기술원은 종자 로열티 절감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충남 7대 작목(딸기, 토마토, 국화, 백합, 인삼, 구기자, 버섯)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17~2026) 매년 4억 원을 투입해 56종의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딸기 6종, 토마토 4종, 국화 20종, 백합 10종, 인삼 5종, 구기자 6종, 버섯 5종 등이다. 다음 [표 2-2]는 충남도 GSP사업의 단계별 품종개발 및 보급 목표이다.

[표 2-2] 충남도 GSP사업의 품종개발 및 보급 목표

작목	품종개발(품종)			보급목표 면적(ha)/재배비율		
	현재	‘20년	‘25년	현재	‘20년	‘25년
합계	155	202	257	2,575(30)	3,097(40)	3,837(50)
딸기	7	8	12	2,424(95)	2,497(96)	2,570(98)
토마토	9	12	15	23(0.1)	115(5)	230(10)
국화	86	110	130	27(33)	50(60)	70(85)
백합	26	35	45	1(12)	5(35)	13(80)
인삼	3	5	10	5(0.2)	300(13)	800(35)
구기자	13	15	20	70(82)	80(91)	89(98)
버섯(양송이)	11	15	20	25(28)	50(70)	65(90)

출처: 윤영환(2016), 충남 신품종 육성·보급 현황 및 현안 문제, 3농혁신대학 “종자·종묘산업 활성화 과정” 자료집, p.34.

(3) 농업유전자원 수집 및 보급 사업

우리나라에서 종자의 보존 및 활용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이하 센터)이다. 이 센터는 1987년 수원의 농촌진흥청 내 종자은행으로 설립됐다가 2008년도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로 개칭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본부는 전주로 이전하고 수원에 중부지소를 두었다.

이 센터의 임무는 첫째,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며, 둘째, 농업유전자원 수집, 보존, 평가, 정보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셋째, 농업유전자원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전문 인력의 육성이다. 이 센터 내에는 50만 자원을 30년간 보존할 수 있는 중기보존시설과 50만 자원을 100년간 보존할 수 있는 장기보존시설이 있다. 또한 30만 자원을 영구보존하는 초저온보존시설(수원)과 10만 자원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DNA은행 시설(전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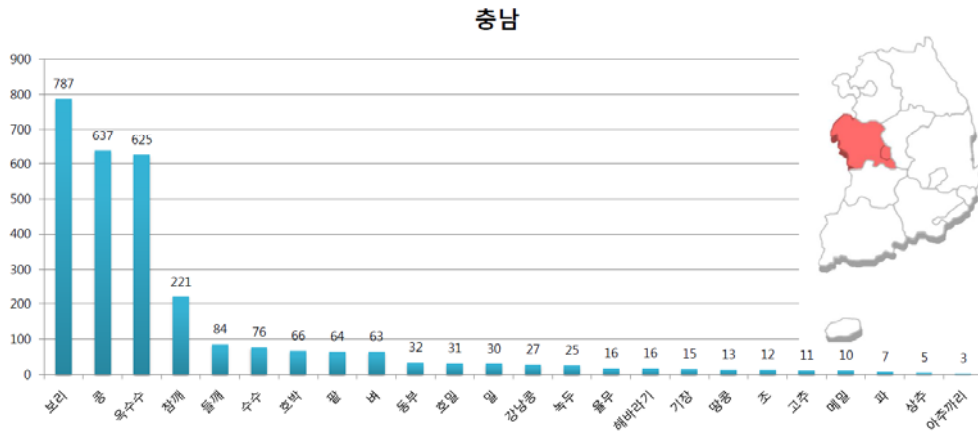
2016년 8월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 중인 자원은 약 27만여 점이고 그 중에 토종씨앗(식량, 원예, 특용)은 52,182점이다.



[그림 2-1]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전주)의 농업유전자원 관리 현황

식량작물만 기준으로 했을 시 전체 157,658점 중 토종종은 41,951점으로 26.6%, 원예작물은 전체 27,718점 중 토종종은 3,761점으로 13.6%, 특용작물은 전체 22,274점 중 토종종은 6,470점으로 29.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충남지역에서 수집한 토종씨앗을 보면, 보리는 787종, 콩은 637종, 옥수수는 625종으로 세 품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참깨 221종, 들깨 84종, 수수 76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



[그림 2-2]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충남지역 수집 토종씨앗 현황

2) 지자체 정책 동향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먹거리 안전성 때문이다. 토종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GMO의 위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대안으로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두 번째는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토종농산물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 토종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내재해성과 내병성에 뛰어나고 희소성으로 인해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토종농산물은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종농산물은 개량종보다 특효성분이 많아 몸에 더 좋다는 인식이 있어 시장에서 더 찾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종품종을 적극 발굴 육성하는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 보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의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자원은 소홀히 한 채 많은 외국종을 들여와 정작 우리 고유의 농작물은 소외되고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미래 농업의 성패는 얼마만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는 서둘러 정부차원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유전자원을 발굴 및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했다.[표 2-3]

각 지자체별 토종농산물 관련(토종가축 포함) 조례 제정·개정 현황을 보면, 2016년 8월까지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2015.1.2), 경기도(2014.10.21), 경상남도(2012.10.4), 전라남도(2011.10.20), 제주특별자치도(2015.10.6), 충청북도(2009.4.10) 등 6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지방자치체 가운데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2016.7.1)이 유일하다.

각 조례안의 법규명과 종류를 보면, 충청북도만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한 곳뿐이다. 시행규칙이 제정됐다는 것은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조례만 제정되고 이러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례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²⁾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다. 다음 5개 지자체 조례의 각 조항은 많게는 15개 항(강원도)이고 적게는 9개 항(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목적, 정의, (도지사) 책임과 의무, 보존·운영계획 수립, 토종재배 사업자(지역) 지원, 토종농산물 재배계획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3] 토종농산물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종류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1	강원도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15.1.2.	일부개정
2	경기도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2014.10.21.	제정
3	경상남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12.10.4.	일부개정
4	경상남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4.10.10.	일부개정
5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토종농산물 및 종자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16.7.1.	제정
6	전라남도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11.10.20.	제정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15.10.6.	일부개정
8	충청북도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09.4.10.	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각 지자체의 조례와 경상남도의 시행 규칙 내용은 뒤편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4개 지자체는 토종작물재배의 진작을 위해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생산비 보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가운데 현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도 한 곳 뿐이다. 경남도의 토종농산물 조례에서 소득보전 직불금에 관한 조항은 제7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제8조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제9조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결정 등 3개 항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8.19.>

제8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9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결정 <개정 2010.08.19.>)

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08.19.>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소득보전 직불제 이외에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토종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의 경우에는 조례에는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함께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8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제9조(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표 2-4] 토종농산물 관련 각 지자체 조례의 조항 내용

지자체 조항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조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의 책무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보존·육성계획 수립	보존·육성계획 수립	보존·육성계획 수립	보존·육성계획 수립
제5조	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민관정책협의회	토종재배지역 지원	사업 지원	지원
제6조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토종재배계획 제출	재배계획서 제출	재배계획서 제출
제7조	협의회 의안 제출	보존·육성 사업의 지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생산비보존지원 신청 및 지원	생산비 보존지원 신청
제8조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토종농산물 재배계획 등 제출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지원금 대상자 결정 지원
제9조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정산 및 평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결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0조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지원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시행 규칙*	-	-
제11조	토종농작물재배계 획의 제출	시행규칙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제2조(보존·육성 품종 지정), 제3조(우선 지원지역), 제4조(재배 신청), 제5조(소득보전 직 접지불금 신청 등), 제6조(종자공급), 제7조(재배관리)		
제12조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제14조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결정				
제15조	시행 규칙				

이밖에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괴산군의 주요 조항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와 의무),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제6조(지원),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제9조(시행규칙) 등으로 도 단위 조례와 큰 차이는 없다.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는 토종농산물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각기 목적은 약간씩 다르다.[표 2-5]

강원도, 경상남도, 괴산군 등은 전통농산물, 대외경쟁력, 안전성,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목적으로 했다. 전라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했으며, 충청북도도 안전한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토종가축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표 2-5] 토종씨앗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의 목적

번호	자치단체	목적	키워드
1	강원도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	전통농산물, 대외경쟁력, 안전성, 소득증대
2	경기도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먹을거리
3	경상남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	전통농산물, 대외경쟁력, 안전성, 소득증대
4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및 국내에서 자생·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괴산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	전통농산물, 대외경쟁력, 안전성, 소득증대
5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 자생하는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	안정적인 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	안정적 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
7	충청북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전적인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토종가축 육성

이상의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 조례 제정 이후 아직 이렇다할 추진 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 사례는 제4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 토종씨앗 보존 실태 및 의견 분석

1. 조사 개요

현재 농촌현장에서는 대부분 정부에서 보급하는 우량종 또는 종묘회사 등에서 개발한 개량종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토종씨앗을 사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농가를 일일이 찾아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사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토종씨앗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 실시됐다. 하나는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자신에 대한 의견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농민이 소속한 단체의 대표에 대한 의견조사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토종씨앗을 재배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인터뷰 조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❶ 인터뷰 대상: 토종씨앗 재배 및 보존 활동 농민 10명, 토종씨앗 보존 활동 관련 단체 대표 5명
- ❷ 조사 기간: 2016년 6월~7월
- ❸ 조사 내용: 토종씨앗 재배 현황, 재배의 이유와 어려움, 토종씨앗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 ❹ 조사 방법: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인터뷰 실시

2. 토종씨앗 재배 농민 인터뷰 분석

1) 재배 농민의 기본 현황

앞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 10명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 [표 3-1]과 같다.

먼저 40대와 50대가 각각 4명, 60대가 2명이다. 지역에서의 정착형태를 보면, 본래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민이 3명, 귀농인은 5명, 농사도 지으면서 다른 일도 하는 반농반×(겸업농)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토종씨앗 보존활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토종씨앗 보존활동에 참가하는 토종씨앗 재배농민 가운데에는 귀농인이 많다는 사실이다.³⁾ 피조사자의 거주 및 활동지역을 보면, 부여와 공주가 각각 3명, 홍성 2명, 논산과 청양이 각각 1명이었다.

[표 3-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

응답 농민	성명	연령	정착 형태	거주지역
①	양*희	50대	본래 농민	부여
②	황*영	40대	본래 농민	부여
③	신*연	40대	귀농인	부여
④	권*옥	50대	본래 농민	논산
⑤	이*행	60대	반농반×	공주
⑥	이*숙	50대	귀농인	공주
⑦	태*섭	60대	귀농인	청양
⑧	황*웅	50대	귀농인	공주
⑨	오 *	40대	반농반×	홍성
⑩	금*영	40대	귀농인	홍성

3) 전통적으로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고령자가 많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종씨앗을 민간차원에서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농사형태, 의식수준에서 일반적인 농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토종씨앗에 대한 정의

현재 ‘토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학술적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단체의 정의도 각각 다른 상태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대상도 명확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토종과 관련한 정책사업 또한 모호하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토종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헌 가운데 토종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정의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이 법률 제2조 제4항 가목 및 나목에는 토종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야생종과 재래종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근래 들어 이들 야생종과 재래종에 관한 규정을 토종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법률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따라서 토종씨앗은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하며,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한 재래종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어디까지 법률적, 명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표 3-2]와 같이 농촌현장에서 생각하는 토종에 대한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재래종에 대한 규정에서 “한 지역 및 수역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래종 가운데에는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어 전해진 품종도 많이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성환읍의 재래농산물인 개구리참외의 경우 일제강점기 일제가 개발한 육성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지역주민들은 성환의 개구리참외가 지역의 토종농산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성종도 형질이 고정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래종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헌과 연구 자료에는 그러한 시간, 즉 육성종이 재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⑦번 농민의 경우, 토종씨앗에 관한 정의를 “오랫동안(30년 이상) 농민에 의해 재배되고 전해져온 씨앗”이라고 했다. 즉 육성종이라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농민의 손에 의해 재배되고 전해져 내려가면 재래종, 즉 토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⑩번 농민의 경우에도 토종씨앗은 “30년 이상 그 지역에서 재배되어 정착된 씨앗”이라고 정의했다. 양쪽 다 토종은 최소한 30년 이상 농민의 손에 의해 전해진 종자라야 토종씨앗이라고 규정했다.

[표 3-2] 토종씨앗에 대한 정의

응답 농민	토종씨앗 정의
①	오래 농사를 지어서 그 씨를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짓는 것
②	작고 재배하기 불편하지만 맛이 좋다.
③	현장에서 보존하고 있고, 형질이 고정되어 있으며 씨앗에 대한 권리가 심은 농민에게 있는 것
④	생명. 개량종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적응한 씨앗. 예) 상추 매꼬지(연무대), 쇠머리지장(충청), 버들벼(공주, 논산), 자치나(전북, 충청), 한아가리콩(산간지방에서 크는 콩으로 내륙에서는 적응 안 됨)
⑤	우리 토지에서 오랜 세월 토착화되어 우리 땅에 맞는 형태로 토종이 되어 버린 것으로 우리 땅 우리 몸에 이로운 형태를 가진 씨앗
⑥	재래종 및 종묘회사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씨앗으로 오랜 경작을 통한 주곡류 및 야채류. 50년 이상 토착화된 씨앗
⑦	오랫동안(30년 이상) 농민에 의해 재배되고 전해져온 씨앗
⑧	지역의 토양에서 대대로 토착된 자연씨앗
⑨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가목 및 나목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을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따라서 토종씨앗은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하며,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한 재래종을 말함
⑩	30년 이상 그 지역에서 재배되어 정착된 씨앗

반면, ⑥번 농민의 경우에는 토종씨앗은 “재래종 및 종묘회사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는 씨앗 이자 오랜 경작을 통한 주곡류 및 야채류로 50년 이상 토착화된 씨앗”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⑦⑩번 두 농민과는 달리 토종씨앗의 기준을 50년 이상 농민의 손에 의해 재배된 씨앗으로 규정했다.

기간 이외에도 토종씨앗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이다. 토종이 재배되는 지역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⑤번 농민은 토종씨앗은 “우리 토지에서 오랜 세월 토착화되어 우리 땅에 맞는 형태로 토종이 되어 버린 것으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토지’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작게는 마을,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 토지’로 규정할 수 있다. ⑧번 농민은 토종씨앗에 대해 “지역의 토양에서 대대로 토착된 자연씨앗”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역시 그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⑩번 농민이 말한 ‘그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토종씨앗에 관한 개념 정의는 쉽지 않다. 따라서 토종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협의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토종씨앗 재배 현황

(1) 농사 경력 및 규모

인터뷰 대상자의 영농활동 경력은 다음 [표 3-3]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 이하는 1명뿐이고 5~10년, 10~20년, 20년 이상이 각각 3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영농활동 가운데 토종농사 경력을 살펴보면, 3년 이하가 6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3~5년, 5~10년, 10년 이상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토종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농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토종씨앗 재배 및 보존 활동을 하는 농민들의 토종농사의 경력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귀농인들이 토종씨앗 재배와 보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토종농사 경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토종재배 농민의 영농활동과 토종농사 경력

영농활동 경력		토종농사 경력	
항목	빈도	항목	빈도
① 5년 이하	⑥	① 3년 이하	①②③⑤⑥⑦⑧
② 5-10년	③⑧⑩	② 3-5년	④
③ 10-20년	②⑦⑨	③ 5년-10년	⑩
④ 20년 이상	①④⑤	④ 10년 이상	⑨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별 전체 농사 면적, 그 가운데 토종농사 면적 현황은 다음 [표 3-4]와 같다. 먼저 전체 농사 면적을 보면, 3마지기 이하는 1명이고, 5~10마지기(1마지기=667㎡)는 3명, 그리고 10~20마지기, 20~50마지기, 50마지기 이상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의 영농규모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의 토종농사 면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토종농사를 1마지기 이하로 재배하는 농민은 2명이고 3~5마지기는 5명, 5~10마지기는 1명, 10~20마지기는 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3~5마지기의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토종재배 농민의 전체 농사 면적과 토종농사 면적

전체 농사 면적		토종농사 면적	
항목	빈도	항목	빈도
① 3마지기 이하	⑥	① 1마지기 이하	②⑥
② 3-5마지기	-	② 1-3마지기	-
③ 5-10마지기	②③⑨	③ 3-5마지기	①③⑤⑦⑨
④ 10-20마지기	⑤⑧	④ 5-10마지기	④
⑤ 20-50마지기	⑦⑩	⑤ 10-20마지기	⑧⑩
⑥ 50마지기 이상	①④	⑥ 20마지기 이상	-

(2) 토종농사 비중 및 토지 이용 형태

토종재배 농민의 토지이용 형태는 다음 [표 3-5]와 같다. 먼저 전체 농지 면적에서 토종농사 면적 비중을 보면, 10% 이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 정도, 50~70% 정도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모두 토종을 재배하는 농가도 2명이었다. 다시 말해 인터뷰대상 농민 가운데 순수하게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의 토지 이용 형태를 보면, 자경지만을 이용하는 농민은 6명이고 임차농지를 이용하는 농민은 7명으로 나타났다. 공동경작지를 이용하는 농민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⑤⑨⑩번 농민은 자경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⑧번 농민은 임차농지와 공동경작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토종농사 비중 및 토지 이용 형태

토종농사 비중		토지 이용 형태	
항목	빈도	항목	빈도
① 100%	③⑧	① 자경지	②④⑤⑥⑨⑩
② 50~70% 정도	⑨⑩	② 임차농지	①③⑤⑦⑧⑨⑩
③ 30% 정도	⑤⑥	③ 공동경작지	⑧
④ 10% 정도	①②④⑦	④ 기타	-

(3) 토종씨앗 재배 품종 및 면적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이 심는 품종과 면적은 다음 [표 3-6]과 같다. 조사 결과, 토종농사 농민들은 최소 3품종의 농작물은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 가운데에는 많게는 몇 십 가지의 품종을 심는 농민도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면적 기준으로 많이 심는 5가지 품종을 조사했다. 따라서 농가별 재배 품종과 면적 현황을 보면, ⑥⑦⑧번 농민이 앓은뱅이 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면적은 각각 100평(1평=약 3.3㎡), 500평, 1,000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④⑩번 농민은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에서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④번 권*옥 농민은 총 1,600평의 논에서 다양한 품종의 토종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홍성에서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⑩번 금*영 농민의 경우에는 총 2,100평에 30종의 토종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벼 다음으로 재배가 많은 품목은 토종콩이다. 부여에서 토종씨앗 보존 활동에 적극적인 ①③번 농민은 토종콩을 각각 1,000평, 400평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토종씨앗 재배 현황을 종합하면, 응답한 농민들은 앓은뱅이밀, 토종벼, 토종콩 등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이외에도 들깨와 참깨, 고추, 팥, 옥수수, 수수, 무, 배추, 생강, 감자, 오이, 가지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토종씨앗 품종 및 재배 면적

응답 농민	품종(면적)
①	①콩(1000평), ②고추(2평), ③상추(2평), ④아욱(2평)
②	①참깨(100평), ②토란(자체소비 정도), ③옥수수(자체소비 정도), ④수수(자체소비 정도)
③	①콩(오리알태, 400평), ②콩(퍼령콩, 120평), ③생강(100평)
④	①벼(1,600평), ②콩(500평), ③팥(100평), ④오이(50평), ⑤감자(50평)
⑤	①쌀(흑찰, 버들벼 1,400평), ②밀(1,000평), ③천년초(200평)
⑥	①앓은뱅이밀(100평), ②노각오이(3평), ③옥수수(10평), ④눈개승마(15평)
⑦	①앓은뱅이밀(500평), ②자광벼(200평), ③옥수수(50평), ④고추(10종, 50평)
⑧	①앓은뱅이밀(800평), ②토종벼(700평), ③키큰찰수수(700평), ④종콩(300평), ⑤호랑이강낭콩(200평)
⑨	①들깨(1200평), ②참깨(1000평), ③팥(400평), 마늘(400평), ④땅콩(200평), 목화(200평), ⑤고구마(100평), 옥수수(100평), 광주무(100평), 녹두(100평). 그 외, 자주감자(50평), 토종배추(50평), 토종고추(5평), 가지와 오이 각 1평
⑩	①벼(31종, 2100평), ②콩(20종, 300평), ③고추(7종, 100평), ④오이(5종, 50평), ⑤가지(3종, 50평)

주: ⑨번은 풀무학교 전공부 교사이자 농민임. 따라서 토종씨앗 재배면적은 같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재배하는 면적임.



[그림 3-1] 토종벼와 잡곡을 재배하는 논산 권*옥 씨 농장



[그림 3-2] 토종밀과 채소를 재배하는 부여 신*연 씨 농장

(4) 토종씨앗의 구입 경로 및 재배 방식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답한 농민이 재배하는 토종씨앗의 구입 경로와 재배 방식은 다음 [표 3-7]과 같다. 먼저, 토종씨앗의 구입 경로에 관한 응답을 보면(중복 응답),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토종씨앗 농민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가 채종은 1명, 우리씨앗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활동 단체를 통해 구입한 농민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구입한 농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의 토종씨앗 보급 활동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의 재배 방식을 보면, 무농약 또는 저농약 방식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통방식이 4명, 유기농방식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일반 농사방식으로 재배하는 농민은 없었다. 이를 미뤄보아 토종씨앗 재배 농민은 일반 농사와는 달리 친환경농업 방식 혹은 전통농업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토종씨앗의 구입 경로 및 재배 방식

구입 경로		재배 방식	
항목	빈도	항목	빈도
① 주변 토종씨앗 농민	④⑤⑨⑩	① 전통방식	③④⑧⑩
②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	①②③④⑤⑥ ⑧⑨	② 유기농방식	④⑦⑨
③ 정부 등 공공기관	-	③ 무농약 또는 저농약 방식	①②⑤⑥ ⑧
④ 기타	⑦(우리씨앗협 동조합)⑨(자가 채종)	④ 일반 농사방식	-

4)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최근 들어 토종농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토종농사를 짓는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3-8]과 같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 내용은 ‘우리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①번 농민은 “우리 씨앗이 갈수록 없어지는 반면, 시중에서 구매하는 씨앗 값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약과 비료 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종농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⑦번 농민은 “종자가 기업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나라 종자기업의 70%가 외국기업에 매각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종자주권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종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종자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외국기업들에게 인수합병되면서 우리나라의 종자주권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종자주권이 외국기업의 손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우리의 종자를 하나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토종씨앗에 관심을 갖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⑧번 농민은 “농사의 시작과 끝은 씨앗문제이다. 그래서 현실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토종씨앗은 중요하다. 또한 토종씨앗은 식량주권, 종자주권과 아울러 미래농업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토종씨앗은 농업의

현실적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미래농업에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는 뜻에서’였다. ⑥번 농민은 “어렸을 때 집에서 씨앗관리를 중요시하던 추억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토종씨앗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종자를 소중히 하고 우리의 종자가 더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토종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성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⑨번 응답자의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한번은 아이들에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중에서 파는 종자를 아이들에게 만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그 종자를 만지고 눈을 부비면 눈이 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파는 종자에는 살충제 등 화학약품으로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 후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자에 좀 더 알아본 결과 시중 판매 종자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임성이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토종씨앗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풀무학교에서 1976년에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해 근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대부분 씨앗을 사다가 썼어요. 생각해 보니 아무리 유기농을 하더라도 화학약품이 코팅된 씨앗을 사다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유기농인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2005년경에 영국의 정원에 대해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영국의 유기농은 종자부터 유기농이 아니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 귀국해 호주의 씨드 세이버스(seed savers)에서 나온 책을 번역하면서 씨앗 받는 방법을 소개했고 동아리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2011년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회원 가운데 관심 있는 회원 10명과 공부 모임을 시작하며 여러 활동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5년에 씨앗도서관을 개관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등 지역주민이 함께 씨앗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2016년 7월 27일 오* 농민 인터뷰 내용을 재정리함)

⑨번 농민의 경우는 우연한 계기에 씨앗의 중요성을 알고 그 후 관련 책도 번역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공부 모임도 만들고 씨앗 나눔 활동도 하면서 유기농업에서의 씨앗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그리고 식품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토종씨앗과 토종농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 홍성에서 토종농사를 짓는 ⑩번 농민은 “자립적인 영농을 위해” 토종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그는 “자립이 유기적인 농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씨앗부터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⑩번 농민은 현재 홍성군 홍동면에서 이웃농민과 함께 자연재배협동조합을 조직해 본인의 논에서 공동으로 토종벼를 재배하고 있다. 그 구체적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농사를 지으면서 차츰 씨앗의 중요성을 깨닫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씨앗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F1종자를 사용해도 불편은 없지만 이렇게 종자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게 과연 지속가능한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씨앗은 농사의 기본인데 가격이 개입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르신과 만남을 통해 씨앗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제가 유기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농산물을 굳이 상품성보다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생산물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게 투입하지만 원래 작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회복하고, 모양은 잘 나오지 않지만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생산성과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농업생산 방식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6~7년 후 이러한 방식이 자연재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재래종은 거름을 주지 않아도 지역 토양에도 잘 적응해 점차 이러한 재래종 품종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씨앗도서관을 통해 재래종 씨앗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앗도서관을 만들어 재래종 씨앗을 보급하면 확대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종자를 바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사 농사를 짓더라도 농산물 판매상이 재래종 농산물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상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 27일 금*영 농민 인터뷰 내용을 재정리함)

이상과 같이 ⑩번 농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농민의 자립을 위해 지역에서 농사의 기본인 씨앗을 자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종농사가 확장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⑥번 농민은 “어렸을 집에서 씨앗을 소중히 관리하는 추억이 남아있어 토종농사를 짓게 됐다.”고 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씨앗을 농가에서 채종해서 농사지었던 전통이 있었으나 근대화 이후 이러한 풍경이 사라졌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향수 차원에서 토종농사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표 3-8]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항목	빈도	이유
① 자립적 영농을 위해	⑩	⑩자립이 유기적인 농사의 기본이기 때문
②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는 뜻에서	⑥⑨	⑥어렸을 때 집에서 씨앗관리를 중요시하던 추억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서 ⑨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불임 씨앗의 심각성, 살충제에 버무려진 씨앗에 위험성을 느껴서
③ 우리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①②③ ④⑤⑦ ⑧	①우리 씨앗이 없어지고 있고, 갈수록 씨앗 값과 더불어 농약, 비료 값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②사라져가는 토종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③매번 사서 심는 것이 아닌 할머니 대에서부터 심고 길러진 종자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④씨앗을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⑤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개척하여 더 나은 삶과 소득을 위해서 ⑦종자가 기업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나라 종자기업의 70%가 외국기업에 매각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종자주권이 요구되는 상황 ⑧농사의 시작과 끝은 씨앗이라 생각함. 현실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토종씨앗은 중요함. 또한 토종씨앗은 식량주권, 종자주권, 미래농업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함
④ 우리 것이 그냥 좋아서	⑥	⑥어렸을 때 집에서 씨앗관리를 중요시하던 추억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서

5) 토종농산물 판매 현황

(1) 토종농산물 판매 방식과 형태

최근 토종농사에 대한 관심이 늘기는 했지만 일반 농사에 비하면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토종농사로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어렵기 때문이다. 토종은 일반적으로 개량종보다 상품성 면에서 뒤떨어지다 보니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장에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다. 그렇다고 토종농산물의 가치와 토종농사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소비자를 설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의 [표 3-9]와 같이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토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조사 결과, 토종농산물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방식은 가까운 지인을 통한 판매와 인터넷 등 SNS 등을 통한 판매가 각각 2명으로 나타났고, 전문 판매업체에 위탁한 판매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법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한 판매, 학교와 연계한 판매, 꾸러미와 같은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한다는 응답자는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굳이 경제적 수익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재배해 자체적으로 소비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토종농산물의 주요 판매 방식

항목	빈도
① 개별적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판매	⑧⑨
②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판매	③⑧
③ 전문 판매업체에 위탁해 판매	①
④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	②④⑥
⑤ 여러 방법으로 판매	⑤
⑥ 기타	⑦(우리씨앗협동조합을 통해), ⑨(**학교를 아는 분들에게), ⑩(꾸러미와 같은 직거래를 통해)

다음으로 토종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 판매하는지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표 3-10]과 같이 원산물 그대로 판매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산물과 가공품으로 판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수확한 토종농산물을 원산물로도 판매하고 약간 가공한 형태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확한 토종농산물을 대부분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아직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문 상품화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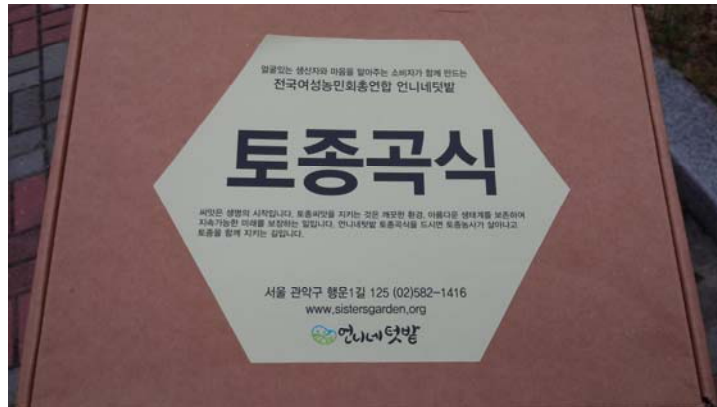
[표 3-10] 토종농산물의 판매 형태

항목	빈도
① 원산물 그대로	123478
② 원산물+가공품	58910
③ 대부분 가공품으로	-
④ 기타	6

토종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상표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은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③번 농민은 “토종농산물을 판매하는 포장지에 판매자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다.”고 했다. 브랜드 또는 상표가 있다는 응답자는 3명으로 ④⑤⑧번 농민이었다. ④번 농민은 “현재 동그랗게 자연이 순환한다는 농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쌀제품에 ‘동그라미’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다른 토종농산물에도 이 브랜드명을 사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주에서 토종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⑤⑧번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이름인 ‘우리씨앗농사’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식 브랜드명이라기보다는 초기 협동조합의 홍보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1] 토종농산물의 브랜드 또는 상표 유무

항목	빈도	브랜드명과 의미
① 있음	458	④동그라미(동그랗게 자연 순환하는 농산물, 현재는 쌀에만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다른 토종농산물에서 사용할 예정임) ⑤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⑧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② 없음	12367910	③단, 포장지에 판매자의 이름은 있음 ⑨**학교를 아는 분들이 주로 이용해 주기 때문



[그림 3-3] 토종상품 판매의 예(언니네텃밭)

(2) 토종농산물의 시장적 가치

토종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다. 우리 기후와 토질에 순화되어 재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 농산물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토종농산물도 나름대로 시장적 가치를 가지는 부분도 있다. 어떤 토종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색택이 우수하거나 약효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효능이 뛰어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본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희소성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 판매되는 토종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토종농산물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결과는 다음 [표 3-12]와 같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4명의 농민은 토종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10~30% 더 시장적 가치를 갖는다고 응답했다. ①번 농민은 “토종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생산량이 적고 보통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10~30% 더 시장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3명은 30~50%라고 응답했고, 2명은 5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⑩번 농민은 “토종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시장적 차이는 없다.”고 응답했다.

[표 3-12] 일반 농산물에 비해 토종농산물이 가지는 시장적 가치

항목	빈도	이유
① 차이 없음	⑩	-
② 0-10%	-	-
③ 10-30%	①②③⑨	①상품이 현 농산물보다 적고 유기농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
④ 30-50%	⑥⑦⑧	-
⑤ 50% 이상	④⑤	-



[그림 3-4] 시장에서 다소 비싸게 팔리는 재래농산물 가공품

6) 토종농산물 인증의 필요성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시장에서 토종농산품(토종농산물과 토종을 이용한 농산가공품)은 일반 농산품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의 시장적 가치를 더 받는다. 이는 토종농산품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의 농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조례에는 있지만 정식 법률에서 규정한 토종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야생종과 재래종에 관한 규정만 있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토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농산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 ‘토종’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농산품이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더 큰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토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토종농산물 판매 시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3-13] 토종농산물 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 ❶번 농민은 “토종의 개념을 정리해서 판매하면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 안심하고 팔고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❺번 농민은 “공신력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❻번 농민은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는 구별하기 어렵다. 경계가 모호하면 소비자에게도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토종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증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❸번 농민은 “토종이라는 인증의 기준이 어렵다. 획일적으로 인증하기 보단 씨앗의 전래와 특성들을 알려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❷번 농민은 “토종을 따로 인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❹번 농민은 “얼굴을 알고 지역에서 서로 믿으면서 사고파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증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즉 토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❿번 농민은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인증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증제도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증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토종농산품의 생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향후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와 같이 토종농산품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러한 인증제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표 3-13] 토종농산물 인증 필요성 유무

항목	빈도	이유
① 필요하다.	①②④⑤⑥ ⑧	① 토종의 개념을 정리해서 판매하면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 안심하고 팔고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음. ②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함. ⑤ 공신력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⑥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는 구별이 어려움. 경계가 모호하면 소비자도 혼란이 올 수 있음 ⑧ 스스로 정한 농법에 따라 자체인증이 필요함. 즉, 인문학적 친환경농업 또는 유기농(사람이 먹고 씨앗 받는 농사)에 의한 토종씨앗 인증 필요
② 불필요하다.	③⑦⑨⑩	③ 인증의 기준이 어려움. 획일적으로 하기 보단 씨앗의 전래, 특성들을 알려 판매하는 것이 중요 ⑦ 토종을 따로 인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⑨ 얼굴을 알고 지역에서 서로 믿으면서 사고파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⑩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 때문

다음은 토종농산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조사 내용이다.[표 3-14] 조사 결과, ④⑤⑥ 등 3명의 농민은 씨앗드림, 흙살림 등 민간 전문업체가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③⑧번 농민은 토종씨앗 재배 농민 자체 인증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①번 농민은 농진청 등 정부기관(국립유전자원센터, 국립종자원 등)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②번 농민은 지자체 산하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토종농산품 인증은 정부 및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전문단체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표 2-14] 적합한 토종농산품 인증제도 담당 기관

항목	빈도
① 농진청 등 정부기관(국립유전자원센터, 국립종자원 등)	①
②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②
③ 씨앗드림, 흙살림 등 민간 전문단체	④⑤⑥
④ 토종씨앗 재배 농민 자체 인증	③⑧
⑤ 기타	⑨(지역주민들)

7)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1)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및 필요 사항

최근 들어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 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토종농사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10명의 농민 가운데 7명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표 3-15] 그 이유도 다양하다. ❶번 농민은 “GMO 등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정성 때문에 우리 것을 많이 찾을 것 같아 토종농사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고 대답했다. ❸번 농민은 “토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재배가 어렵고 판로가 불명확해 빠르게 증가하기보단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즉, 토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재배상의 어려움 등으로 그 속도는 그리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❹번 농민은 “소비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변이되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들어 GMO의 위해성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서서히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토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토종농사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❸번 농민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있고 토종씨앗 농사를 짓는 농민들 사이에도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토종농사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❹번 농민은 좀 더 직접적으로 “토종씨앗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토종농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많은 응답은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❷번 농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토종농산물이 여러 면에서 가치는 있지만 시장에서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❺번 농민도 “미미한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❹번 농민은 “향후 토종씨앗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GMO에 대한 불안감 증가,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 귀농인구의 증가, 주말농장의 확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향후 토종씨앗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해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5]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항목	빈도	이유
① 점차 확대될 것이다.	①②③⑤ ⑥⑧⑨	①GMO 등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정성 때문에 우리 것을 많이 찾을 것 같음. ③토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재배가 어렵고 판로가 불명확해 빠르게 증가하기보단 점차적으로 증가 예상 ⑤건강한 먹거리를 보급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⑥소비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변이되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음 ⑧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있고 토종씨앗 농사를 하는 농민의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 ⑨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
②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④	④GMO에 대한 불안감 증가,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 귀농인구의 증가, 주말 농장의 확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③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⑦⑩	⑦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음 ⑩미미한 변화만 있을 것임

앞서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토종씨앗의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향후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향후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16]과 같다.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가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각 사항별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먼저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이다. ③번 농민은 “법률 및 법제도 속에서 채종포, 직불제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서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응답했고, ④번 농민은 “조례 제정은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토종씨앗과 관련한 활동, 사업 지원이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⑥번 농민은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농민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고 했다.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농민들도 이에 대해 좀 더 인식하고 이러한 규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①번 농민은 “토종씨앗이 좋은

건 알지만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토종농사 짓기를 꺼린다. 앞으로 가격과 판매가 보장된다면 토종농사를 많이 지을 것 같다.”고 했다. 즉, 현재로써는 토종농사를 지어도 토종농산물 가격이 높지 않고 판로도 어려워 농민들이 농사를 꺼리기 때문에 직불제 지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⑦번 농민도 “직불제는 농사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가 2008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정된 토종씨앗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토종씨앗 재배 농민 간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⑨번 농민은 “토종씨앗 보존 활동들이 지역별로, 지역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지역의 씨앗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지역 내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선 응답에서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도 중요하고 직불제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토종씨앗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 간 토종씨앗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는 정보교류가 중요하며 이들 간 유대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⑩번 농민도 “저변 확대가 먼저이기 때문에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 및 관련 주체 간 정보교류와 유대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표 3-16]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	빈도	이유
①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	③④⑥	③법률 및 법제도 속에서 채종포, 직불제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서 법제도 개선이 우선 ④조례 제정은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사항임. ⑥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농민들이 인식을 하게 됨.
② 토종씨앗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및 연구	-	-
③ 지역 내 토종씨앗 재배 및 보유 현황 조사	-	-
④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	①②⑦	①토종씨앗이 좋은 건 알지만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 판매경로나 계약 등을 통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격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 20%정도 높다면 농사짓기 어려워도 가격 보장과 판매보장이 된다면 토종농사를 많이 지을 것 같음. ②재배를 많이 해야 판매가 확대된다고 생각함. ⑦직불제는 농사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 여겨짐.
⑤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⑨⑦⑩	⑨토종씨앗 보존 활동들이 지역별로, 지역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지역의 씨앗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지역 내 소통이 중요함. ⑩저변 확대가 먼저이기 때문
⑥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의 토종씨앗 채종포 마련 및 보급	⑤⑧	⑤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임. ⑧종자의 보존 활동은 국가와 지자체의 농업 관련 기관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 따라서 농정기관과 농민이 함께 관련 활동 추진 필요

앞서 세 가지 필요한 사항 외에도 ⑤⑧번 농민은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의 토종씨앗 채종포 마련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⑤번 농민은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응답했고, ⑧번 농민은 “종자의 보존 활동은 국가와 지자체의 농업 관련 기관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농정기관과 농민이 함께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종자에 관한 사항은 민간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부에도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농민이 함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앞선 조사에서 토종씨앗 확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은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의 정도와 이유를 살펴보았다.[표 3-17]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5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역시 5명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❶번 등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토종씨앗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❷번 농민은 “종자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에 의한 토종씨앗 보존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 ❸번 농민은 “토종씨앗 농사에 대한 지원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❹번 농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든다고 하면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들(예를 들어, 채종포 운영, 교육, 자료집 발간 등)을 잘 찾아서 토종농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정하길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즉, 조례 제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리고 이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관련 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충남도에서 토종씨앗 관련 조례 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17]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이유

항목	빈도	이유
①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⑥	①장기적으로 볼 때 토종씨앗의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 ③사라지는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해 조례제정은 매우 필요 ④조금 늦었지만 지금은 중요하니까 ⑥농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
② 필요하다.	⑤⑦⑧⑨⑩	⑤우리 씨앗을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함 ⑦종자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에 의한 토종씨앗 보존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함 ⑧토종씨앗 농사에 대한 지원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⑨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들(예를 들어, 채종포 운영, 교육, 자료집 발간 등)을 잘 찾아서 토종농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하지 않다.	-	-

8)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우선 사항

마지막으로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19]와 같다.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다. ③⑦⑨번 농민은 “정부가 GMO 농산물을 개발하거나 들어오는 것을 중단하고 토종씨앗에 대한 보존 및 육성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GMO 농산물을 개발하거나 들어온다면 토종씨앗과 같은 기존의 종자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GMO 농산물이 건강에도 해롭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GMO 농산물은 신중히 다뤄야 하고 현재 수입되는 GMO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①⑧⑩번 “농민들은 토종씨앗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②④⑤번 농민들은 “직불제와 토종농사에 필요한 여러 시설에 대한 지원의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③번 농민은 “토종씨앗에 대한 보존 및 육성 정책 수립의 필요하다.”고 했고 ⑨번 농민은 “지자체가 토종씨앗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중앙정부에서도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14109번 농민 등은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채종포와 토종씨앗관리소 설립, 씨앗도서관 설치 지원, 토종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토종자원에 대한 도 단위 DB 작성,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4번 농민은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이들 간 상호 연계하는 네트워크 또는 중간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8번 농민은 “대체 특화 작물로서의 토종씨앗에 대해 도 농정 차원의 지원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인해 논작물에 대한 대체 작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토종작물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각 시군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1368910번 농민 등은 “지자체에서 토종씨앗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토종씨앗을 발굴 조사해 이들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다. 4번 농민은 “지자체 등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토종농산물을 선물로 활용하길 기대”했으며, 6번 농민은 “시군 단위에서도 토종농사에 대한 토종씨앗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작목반을 구성해 토종씨앗을 적극 육성하길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9번 농민은 “토종씨앗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씨앗 관련 자료집이나 책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토종자원을 적극 발굴해 이를 책자화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강원도 횡성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충남도 및 각 시군에서도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18] 중앙정부, 충남도, 각 시군의 우선 추진 사항

응답 농민	우선 추진 사항		
	중앙 정부	충남도	각 시군
①	토종씨앗 직불금 마련, 토종씨앗 알리기 광고	토종씨앗 사례 발표, 토종씨앗 단지 조성, 토종씨앗 판매소 설치	토종씨앗 보관소 및 종자 채취 생산 현장 마련
②	토종씨앗 직불제를 통한 지원	-	토종씨앗 종자 보유, 재배 홍보
③	GMO 개발 중단(토종종자의 오염문제), 토종씨앗에 대한 보존 육성 정책 수립	토종보존 농가 육성, 토종종자 보존 네트워크 또는 중간조직 운영	각 시군별 토종종자 조사 및 조사에 의한 토종브랜드 개발
④	도정기계, 저온창고 등 토종농부에게 기본적인 것 지원	채종포 설치, 토종농사 농민이 운영하는 씨앗도서관 지원	지자체 등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토종농산물을 선물로 활용
⑤	자금 지원이 순조로웠으면 함.	농민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바람	우리 씨앗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
⑥	토종이라 할 수 있는 씨앗 확보	토종 농사짓는 농민 확대 방안 강구	토종농사에 대한 조례 및 작목반 구성
⑦	GMO가 아닌 토종씨앗 보존 및 재배에 관심을 가져야 함. 토종장터를 더 확대하면 좋겠음	토종농사에 소요되는 토지, 농자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토종농사에 소요되는 퇴비, 농자재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⑧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가 토종씨앗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부 농정기관(각 도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종씨앗의 중요성 고지 필요	토종농사 농민과 종자의 중요성, 대체 특화 작물로서의 토종씨앗에 대해 도 농정차원의 지원책 연구	자발적 토종농사 농민과 토종종자에 대한 현황 파악
⑨	각 시도와 시군에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만드는 데 직접적인 협력과 도움을 주길 바람. 국민들이 GMO 문제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GMO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수입검역을 철저히 하길 바람	각 지역별로 씨앗도서관을 두고 지원했으면 함. 각 시도와 시군에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씨앗들을 찾아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토종씨앗 수집, 보존, 나눔 등이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필요함.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길 바람. 토종씨앗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씨앗 관련 자료집이나 책 발간 등이 필요	
⑩	연구지원, 자원조사, 농민교육(육종 관련)	각 지역에 토종씨앗관리소 설립 지원, 도 단위 DB 작성. 교육 및 연구 지원	지역의 토종자원 조사, 체계적 관리

3.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 인터뷰 분석

앞의 2절은 토종씨앗을 재배한 농민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면, 이번 절은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 대상 활동단체는 충남도내 5개 단체이며 조사 시기와 방법은 앞 절의 내용과 동일하다.

1) 활동단체의 일반 현황

현재 충남도내에서 토종씨앗 보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 중에서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부여군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등 5곳을 선정해 조사했다. 이들 5단체의 기본 현황은 다음 [표 3-19]와 같다.

먼저, 결성시기를 보면, 부여군여성농민회가 비교적 오래인 2005년에 결성됐고 나머지는 2013년 이후에 결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여군여성농민회는 원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위해 조직됐다기보다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결성됐기 때문에, 토종씨앗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는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체의 조직 형태를 보면, 3곳이 협동조합이었고 2곳은 임의단체이었다. 활동지역은 부여와 홍성이 각각 2곳이고 공주가 1곳으로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담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3곳이고, 고정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부여군여성농민회와 홍성씨앗도서관 2곳뿐이었다. 참여 회원 수는 많게는 40명(홍성씨앗도서관), 적게는 7명(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곳은 10~2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참여 회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농민 형태를 보면, 3곳은 대부분 일반 농민이었으나 홍성의 씨앗도서관과 자연재배협동조합은 대부분 귀농인이었다. 이들 두 단체가 입지한 홍성군의 홍동면은 귀농인이 많은데 이들이 토종씨앗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19]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 일반 현황

항목\단체명	부여군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결성시기	2015	2005	2014	2015	2013년
단체 형태 (정식명칭)	법인 (충청남도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협동조합 (씨앗도서관과 도시텃밭연구소 공동 운영)	임의단체 (이전에 연구모임으로 활동)	협동조합 (이전에 임의단체 2년)
향후 준비 형태(법인이 아닌 경우)	-	논의중	-	논의중	-
활동지역	부여	부여	공주	홍성	홍성
전담직원 유무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고정사무실 여부	없음	있음 (공공기관 임대사무실)	있음	있음 (단체에서 임대)	없음
참여 회원 수	20명	20명	11~20	40명	7명
참여 농민 형태	대부분 농민	대부분 농민	대부분 농민	대부분 귀농인	대부분 귀농인
최근 회원 변동	21명(2015년) 21명(2016년)	20명(2014년) 20명(2015년) 20명(2016년)	10명(2015년) 12명(2016년)	87명(2015년, 연회비 납부) 40명(2016년, 월회비 납부)	5가족(2013년) 6가족(2014년) 6가족(2015년) 7가족(2016년)

다음으로 이들 단체 결성의 구체적 배경은 다음 [표 3-20]과 같다.

각 단체별 그 핵심 배경을 보면, 부여토종종자센터는 토종씨앗 재배 농민을 조직하고 토종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유통하기 위해서였고, 부여군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공주의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은 토종 가운데 특히 주곡인 쌀, 보리, 밀을 재배해 식량자급률도 높이고 이를 대체 작물로 개발해 수익성도 높이기 위해서 결성됐다.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은 이전부터 동호회 성격의 씨앗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텃밭연구소도 설립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홍성씨앗도서관은 현재 다국적 기업, 대기업에 의해 독점된 상품화된 씨앗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 채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사를 위해 결성됐고,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역시 씨앗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 내 소규모 친환경농가의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신규 귀농인이 지역에 들어온 이후 농사법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쉬운 농사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자연재배협동조합 결성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2011년 8월을 전후로 해서 홍동지역은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생협에 납품을 하는데 생협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가는 단작을 하게 되고 농가도 대농 위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소규모 친환경농가는 갈수록 소외되어 친환경농업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와 귀농인을 중심으로 자연재배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토종벼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대농과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일본 가와구치(澤口)가 창시한 자연농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적게 투입하는 자연농업을 하면 다른 친환경농업과 차별화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은 자연재배 농업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농지 구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농지 규모를 넓히면서 씨앗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굳이 재래종자가 아니라도 농민들이 F1종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 근대, 담배, 상추 등 가격이 싼 씨앗들은 형질을 고정하기도 쉽고 채종하기도 쉽습니다.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자긍심 높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해 자연재배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에는 9농가가 900평의 논에서 31개 재래 벼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가족들끼리 모여 농사도 짓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7일 금*영 대표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해 정리함)

[표 3-20]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 결성의 구체적 배경

항목\단체명	구체적 배경
부여토종종자센터	1. 토종농산물을 보호하고 토종종자 생산자를 조직, 토종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 2. 토종종자 증식으로 농민, 소비자들에게 토종 나눔 및 보급
부여군여성농민회	1. 여성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주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1. 토종, 특히 주곡인 쌀, 보리, 밀의 일반 농사로 식량자급률 향상 2. 대체 수익작물로의 농사를 위해
홍성씨앗도서관	1. 자가 채종 씨앗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사를 위해 2. 다국적 기업, 대기업에 독점된 씨앗에 의존하지 않고 씨앗 받는 방법을 이어가기 위해(예, GMO, F1종자, 불임종자 등)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1. 경제적 자립 2. 신규 귀농인 지원 3. 재배의 편이를 위해(자가채종 등)



[그림 3-5] 공주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과 씨앗도서관



[그림 3-6] 홍성씨앗도서관과 채종포

2) 영농 및 판매 활동 현황

(1) 영농 활동 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된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영농 현황은 다음 [표 3-21]과 같다.

먼저 이들 단체의 토종농사 공동토지 유무이다. 조사 결과,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체는 모두 공동으로 토종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토지 면적을 보면, 홍성씨앗도서관이 1마지기 이하로 가장 적고,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은 10~20마지기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부여군여성농민회는 3마지기 이하, 부여군토종종자센터는 5~10마지기를 공동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 단체 회원들이 주로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조사이다. 이들 단체에서 재배하는 품목과 품종들은 벼(자광벼, 흑갱, 벼들벼 등), 밀(얹은뱅이밀), 보리(검은보리), 콩(강낭콩, 완두콩, 오리알테콩 등), 옥수수(쥐이빨옥수수, 키큰옥수수 등), 수수, 고추, 시금치, 토마토, 상추, 생강, 감자 등 다양하다. 이들 단체의 토종씨앗 구입은 주로 씨앗드림과 같은 외부 전문단체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주변 토종씨앗 농민으로부터 얻어서 재배하고 있다. 홍성씨앗도서관에는 매년 씨앗수집 활동을 통해 얻은 토종씨앗을 선별해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의 재배방식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자연재배 등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주로 친환경농업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의 영농 현황

	부여군토종 종자센터	부여군여성 농민회	우리씨앗농 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 서관	홍성자연재 배협동조합
토종농사 공동토지 유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공동토지 면적	5~10마지기	3마지기 이하	10~20마지기	1마지기 이하	-
주요 재배 품종 (면적 순)	토종콩(15종), 고추, 강낭콩, 생강, 옥수수	토 종 옥 수 수 (쥐이빨옥수수 등), 토종콩	토 종 벼 (자 광 벼, 흑강, 버들 벼), 앓은뱅이 밀, 검은보리, 키 큰 옥수수, 콩	시금치, 토마 토, 상추, 완 두콩, 옥수수	벼, 콩, 수수, 조, 고추, 서 류
토종씨앗 구입 경로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	주변 토종씨 앗 농민(매 년 씨앗수집 활동 진행)	주변 토종씨 앗 농민
회원들의 주요 재배 방법	유기농방식	무농약이나 저농약 방식	무농약이나 저농약 방식	유기농방식	자연재배



[그림 3-7] 자연재배협동조합 회원들이 자연농업 방식으로 재배하는 벼농사 모습



[그림 3-8] 홍성씨앗도서관의 작물식재 및 채종 모습

(2) 가공 및 판매 활동 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된 토종씨앗 활동단체 회원들이 생산한 토종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활동의 현황은 다음 [표 3-22]와 같다.

먼저 주요 판매 방식을 보면, 부여토종종자센터와 부여군여성농민회는 개별과 공동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끼리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은 주로 꾸러미(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홍성씨앗도서관은 판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씨앗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풀무학교 전공부 학생들과 함께 토종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토종농산물을 판매하기보다는 주로 교육 및 홍보, 전파 차원에서 토종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표 3-22] 토종농산물 가공 및 판매 활동

항목\단체명	부여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주요 판매 방식	개별+공동 판매	개별+공동 판매	주로 회원들 간 공동 판매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음	꾸러미
주요 판매 형태	원산물+가공품	원산물 그대로	원산물+가공품	-	원산물+가공품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와의 직거래 연계 여부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구체적 판매업체	로컬푸드, 생협	생협	-	없음	농부장터, 음식점
공동 브랜드 및 상표 유무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브랜드 의미	-	-	우리씨앗농사	-	-
- 없는 경우 향후 계획	공동브랜드 만들 계획	공동브랜드 만들 계획	-	당장 계획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만들 계획	만들 계획 없음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와의 직거래 연계 여부를 보면, 부여토종종자센터와 부여군 여성농민회는 로컬푸드판매장과 생협 등을 통해 판매하고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은 농부장터와 음식점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1곳뿐이지만 부여의 두 단체는 향후 만들 계획이고 홍성씨앗도서관은 향후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했다.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은 공동브랜드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사회 참여 현황

일반적으로 토종씨앗 활동단체들은 토종씨앗 보존 활동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 [표 3-23]은 이번 조사 대상인 5개 활동단체의 사회참여 활동 현황이다. 먼저 GMO 등 식품안전 관련 캠페인과 사회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질문에 부여토종종자센터 등 4개 단체는 ‘적극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은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단체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활동 내용을 보면, 부여의 두 단체와 홍성씨앗도서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씨앗도서관은 최근 6개월 간 홍성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GMO 없는 홍성을 위한 시민모임>을 만들고 GMO 반대 행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MO의 확대가 역으로 토종씨앗 활동단체 회원들을 결집시키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MO 반대 운동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은 토종씨앗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은 농사일로 대외적인 활동이 어렵다 보니 내부 교육과 GMO 반대 단체 등에 회비 납부 형식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3-23]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사회 참여 현황

항목\단체명	부여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GMO 등 식품안전 관련 캠페인과 사회운동에 참여 여부	적극 참여	적극 참여	어느 정도 참여	적극 참여	적극 참여
- 구체적 참여 내용	GMO 교육, GMO 반대행동 참여	사라져 가는 토종을 지키기 위해 GM 농산물 도입 반대 투쟁	사회 공감대 형성 정도	최근 6월, 홍성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GMO 없는 홍성을 위한 시민모임을 만들고 GMO 반대 행동을 전개하고 있음.	단체 회비 납부, 내부 교육 등

3)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및 추진 시책

다음 [표 3-25]는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향후 전망과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향후 전망은 크게 토종씨앗에 대한 전망과 단체 회원에 대한 전망이다. 조사 결과, 5개 단체 중 부여토종종자센터 등 4개 단체는 향후 토종씨앗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

했고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은 ‘현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단체 회원 전망도 동일하게 전망했다.

다음으로 여건 가능 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대해, 부여토종종자센터는 ‘지역 내 토종 씨앗 조사’가 시급하다고 했고,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과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은 ‘타 지역과의 연대 강화’가 가장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부여군여성농민회는 ‘토종씨앗 보급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이 시급하다고 했고, 홍성씨앗도서관은 ‘지역 내 토종씨앗 조사뿐만 아니라 회원 간 유대 강화와 조직의 내실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했다.

특히 홍성씨앗도서관의 오 * 대표는 “토종씨앗 보존 활동은 재배자와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 및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지역 안에서 씨앗을 받는 채종 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씨앗 혹은 씨앗 관련 단체의 의미와 가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표 3-24] 토종농산물의 향후 전망 및 추진 사업

항목\단체명	부여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	점차 확대	점차 확대	점차 확대	점차 확대	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을 것
단체 회원의 향후 전망	점차 증가	점차 증가	점차 증가	점차 증가	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을 것
여건 가능 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사업	지역 내 토종씨앗 조사	토종씨앗보급 및대국민 홍보 활동	타 지역과의 연대 강화	지역 내 토종씨앗 조사 회원 간 유대 강화 및 조직의 내실화	타 지역과의 연대 강화
- 구체적 이유	지역 내 씨앗조사를 통한 제반 여건 확대	-	단위 활동 범위가 일정 규모, 즉 소비자, 생산자를 포함하는 크기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	우선 지역 내 자가채종 및 토종씨앗의 현황을 제대로 알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	경험과 씨앗교류

4) 토종씨앗 활동단체의 필요 사항

다음 [표 3-25]는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각 활동단체가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역 내 토종씨앗 재배 및 보유 현황조사’,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5개 단체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토종씨앗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또한 토종재배 농민들 간 유대 강화 및 조직화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 이유는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과의 연결(일종의 네트워크)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씨앗을 보급하고 자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홍성씨앗도서관 관리자 인터뷰 내용)

[표 3-25] 토종씨앗 활동 단체의 필요 사항 및 조례의 필요성

항목\단체명	부여토종 종자센터	부여군여성 농민회	우리씨앗농 사협동조합	홍성씨앗 도서관	홍성자연재 배협동조합
가장 필요한 사항	지역 내 토 종씨앗 재배 및 보유 현 황조사	지역 내 토 종씨앗 재배 및 보유 현 황조사	관련 법률 및 조례 등 의 제정	토종씨앗 재배 농 민들 간의 정보교 류 및 유대 강화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 구체적 이유	지역 내 재 배 및 현황 조사를 통해 토종씨앗 확 보 및 토종 농민 조직화	-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씨앗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활동은 씨앗도서관 자체 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문제 는 그 이후임	저변확대가 먼저
조례 제정의 필 요성	매우 필요	매우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필요
- 구체적 이유	토종씨앗 보 존 및 확대 를 위한 구 체적 법제도 마련	-	지원을 위한 근거와 지자 체 내 농민과 행정의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	-	토종씨앗을 체 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5) 정부 및 각급 지자체의 우선 추진 과제

마지막으로 토종씨앗 확대와 관련 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충청남도, 각 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관한 조사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26]과 같다.

조사 결과,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토종씨앗 육성정책 수립, 연구와 조사, 농민교육(육종 및 채종 관련)이었고, 충남도에는 토종씨앗 육성을 위한 중간조직 운영, 판로 확보, 조례 제정, DB 작성, 교육 및 연구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서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 내 토종자원 실태조사 및 관리, 토종재배 농가 및 활동단체 지원, 토종재배 농가 확보 및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6] 토종씨앗 확대 및 보존 활동 단체의 발전을 위한 각급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항목\단체명	부여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중앙정부	토종종자 육성정책 수립	안정적인 가격 보장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에서 토종씨앗의 중요성 연구와 조사 및 실행	GMO 개발 중지, 소농/유기농업 살리기 (농민의 필요에 의한), 기업의 씨앗독점 축소 내지 금지	연구지원, 자원조사, 농민교육(육종관련)
충청남도	토종종자 육성을 위한 중간조직 운영, 보존농가 육성	판로 확보	도 행정차원에서 특화작물로서의 지원책 연구	조례 제정	각 지역에서 토종씨앗 관리소 설립지원, 도 단위 DB 작성, 교육 및 연구지원
각 시군	지역 내 실태조사	농가 확보	토종씨앗과 토종씨앗 농민에 대한 현황 파악	씨앗을 지키는 단체, 농가, 농장 지원. 토종씨앗 수집활동이나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	지역자원 조사, 체계적 관리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충남도내 토종씨앗 보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 조사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민 10명이고, 두 번째는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단체 5곳이다. 이들에 대한 인터뷰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토종씨앗에 대한 기준은 각기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에 대한 기준이 특히 달랐다. 토종씨앗의 형질고정은 응답자에 따라 30년, 50년, 70년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토종씨앗에 대한 개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토종농사 농민들의 경력이 적고 면적도 작았다. 토종농사 경력을 보면, 3년 이하가 절반이 넘었고 면적도 3~5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토종작물의 특성상 면적을 넓히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귀농인이 많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토종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최근 들어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한 반대급부로 토종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토종재배 농민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토종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토종재배 농민들은 토종농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전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러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토종농사가 단시간 내에 급격한 성장은 어렵게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조사된 토종씨앗 보존 활동단체들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 조직기반이나 운영체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홍성과 공주에서는 씨앗도서관을 만들긴 했지만 기반이 열악한 상태이고 부여에서는 부여여성농민회와 부여토종종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업을 도모할 이렇다할 공간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행정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이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토종씨앗의 보존 및 확대를 위해서는 각급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토종씨앗을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중앙정부 연구기관 위주로 보관하고 있는 토종씨앗을 지역과 좀 더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세부사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씨앗도서관 활성화, 채종포 육성, 토종브랜드 개발, 연구 및 자원 발굴, 조례 제정 및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토종씨앗 재배농가와 관련 단체 그리고 지방정부 등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1) 전국 사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5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표 4-1]

이 가운데 경남도의 경우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 규칙을 만들어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종농산물 확인단 운영, 토종농산물 매뉴얼 제작, 토종종자 11개 품목 공급,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 개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계획 추진 등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에 이어 최근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에 적극적인 광역지자체는 경북도이다. 경북도는 종자 클러스터 5대 핵심사업으로 과수특화 민간육종단지, 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국립 백두대간권역 종자증식센터, 국립토종종자식물원, 한국 농업유전자자원 연구·저장센터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책사업화와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혁신도시 드림모아프로젝트 주력 사업으로 기획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전략구상을 가시화하고 있다.⁴⁾ 즉,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농업관련 기관들이 경북도내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전남도, 제주특별자치시에서도 토종자원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북도도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4) 무등일보 2016년 8월 5일자 보도 내용.

[표 4-1] 각 지자체별 토종농산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 내용	주관	비고
경기	■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사업(수집, 전시, 증식, 보존 및 토종학교 운영) ■ ' 14년 조례 제정	농업정책과	씨드림
강원	■ ' 15년 조례 제정	농업정책과	
경남	■ ' 08년 조례 제정 ■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토종농산물 확인단 운영(실비 보상, 심사 수상) ■ 토종농산물 매뉴얼 제작 ■ 토종종자 11개 품목 공급 ■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 개최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계획 추진	친환경농업과 농업자원관리원	
경북	■ 토종종자 생산 증식포 운영(시험연구비 포함) ■ 국립토종종자식물원 추진	농업자원관리원	
전남	■ ' 11년 조례 제정 ■ 토종자원 보존·육성 추진단 구성 ■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 토종작물 유전자원포 조성 관리 재료비(10종)	농업기술원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전북	■ 토종농산물 전시포 운영 ■ 전북도의회 토종종자연구회 구성 ■ 조례 제정 논의 중	농업기술원 전북도의회	
제주	■ ' 12년 조례 제정 ■ 토종씨앗실태조사 ■ 토종종자 보급사업 추진	농업기술원	

출처: 『2013년 전여농 토종학교』 자료집, p.30.를 토대로 최근 진행내용을 추가해 작성한 것임.

토종자원이 지역별로 다양한 만큼 각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사업도 다양하다.[표 4-1]

경기도는 파주의 장단콩을 이미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지역 축제와 결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대추밤콩, 늦들깨, 냉정적상추, 찰수수, 조선오이를 보존 및 육성하고 있다. 그 외 울벼, 자광벼 등 다양한 토종씨앗을 보급하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와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도 토종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최근 들어 토종자원 개발과 육성에 적극적이다. 이미 명성이 높은 무등산수박을 비롯해 영광모시, 무안갯, 영암순무, 곰보배추, 돌산갯, 여수잎방풍, 해남세발나물, 순천합초, 곡성사과,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적토미,

녹토미, 흑토미 등의 토종농산물을 지역특화작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토종자원인 단지무, 초피나무, 메밀, 좁쌀, 조, 푸른콩을 보존 및 육성해 제주도 지역특화작물로 적극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외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토종자원을 적극 개발해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할 방침이다.

[표 4-2] 각 지자체별 중점 보존·육성 대상 토종품종 및 사업 내용

구분	대상 품목	사업 내용
경기	■ 장단콩	장단콩축제 등을 통해 보급 확대
	■ 대추밤콩, 닛들깨, 냉정적상추, 찰수수, 조선오이	보존 및 육성사업 추진
	■ 올벼, 자광벼, 올콩, 새알콩, 영양고추, 쇠뿔고추 등	보급 종자
경남	■ 연, 속칭, 쥐눈이콩	보존 및 육성사업 추진
	■ 사리태, 아팔, 감장깨, 감정동부, 찰수수, 차조, 기장, 메밀, 토란, 울무, 메밀, 도라지, 민들레, 조, 수수, 기장, 동부	보급 종자
경북	■ 토종배추와 무	김치, 시래기, 니물, 초철, 엿 등으로 특화상품 개발
충남	■ 개구리참외(천안 성환)	지역명품화 농작물로 육성
충북	■ 재래종마늘(단양군)	
	■ 올벼, 자광벼, 올콩, 새알콩, 영양고추, 쇠뿔고추 등	보급 종자
전남	■ 무등산수박	재배 면적 확대
	■ 영광모시	품종 보호 출원 등 브랜드 파워 강화
	■ 무안갯	재래종 갯 수집 및 보급
	■ 영암순무	지역특화작물로 육성
	■ 공보배추, 여주	약리 효과가 커 약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돌산갯, 여수잎방풍, 해남세발나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 순천함초, 순천천매, 곡성사과, 거문도썩, 전도검은쌀,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토종작물의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창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확보, 지역특화작물로 육성
	■ 적토미, 녹토미, 흑토미(장흥군)	시범단지 조성, 생산기술 등 매뉴얼 개발,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전북	■ 토종다래	신소득 원예작물로 육성
	■ 갯기름나물, 독활, 개미취, 고려양강취	기능성 토속채소 재배 확대 보급
제주	■ 단지무	항산화 성분이 탁월하고 칼슘 함량도 높아 건강식품으로 개발
	■ 초피나무(제주어: 제피낭)	여린 잎은 향신료용으로 사용. 식중독, 천식, 요통, 구토, 치통 등에 효과가 있어 산업화 추진
	■ 메밀	묵이나 빙떡 제조
	■ 좁쌀	감주 제조
	■ 조	오메기술 제조
	■ 푸른콩	‘맛의 방주(Ark of Taste)’ 등재 후 문화유산으로 홍보

2) 경남도 사례

경남도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토종농산물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대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각종 개량 품종이 밀려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재발견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것⁵⁾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토종농산물 조례 제정을 통해 첫째, 국내 최초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으로 토종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육성했고, 둘째, 종자은행 운영으로 사라져가는 토종 유전자원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농업자원관리원 종자은행 2016년 현재 3,460점)를 유지하고 있고, 셋째, 토종농산물 테마 전시포 운영과 재배농가에 토종종자 무상보급으로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종농산물은 경제성이 낮아 여전히 대부분의 농가에서 외면해 소수농가에서 재배되고 있거나 민간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보존적 차원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가 토종농산물 조례를 제정한 이후 토종작물 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났으나 경제성을 갖춘 소득작물로 특화되지는 못하고 있다.⁶⁾ 그 결과 최근 들어 경남도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내 토종농산물 재배농가는 1,204농가에 재배면적은 218ha이었다.⁷⁾ 이는 2014년 1,819농가, 273ha에 비해 재배농가 34%, 재배면적 20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08년 토종농산물 조례를 제정해 토종농산물 육성에 힘쓴 결과 2009년 30농가 3.1ha에서 매년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4년을 정점으로 재배면적이 오히려 줄었다. 이는 농가에 지급되는 소득보전 직불금이 적어 농가의 토종농작물 재배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⁸⁾ 또한 경남도가 농업자원관리원을 통해

5) 한겨레 2008년 5월 8일자 보도내용 중 당시 김종진 경남도 농수산국장의 인터뷰 내용.

6) 경상남도 친환경농산과.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계획. 2016. 06. 02.

7) 2015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재배면적은 토란 10ha, 메밀 23ha, 울무 11ha, 도라지 11ha, 연 36ha, 민들레 1ha, 조 15ha, 수수 13ha, 기장 2ha, 검정깨 14ha, 쥐눈이콩 40ha, 속칭 39ha, 동부 1ha, 이팍 3ha이었다. 재배면적은 거창 36ha(재배농가 200), 함천 34.2ha(183), 산청 32.7ha(160), 하동 30.9ha(152) 순이었다.(자료: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계획, 2016)

8) 현재 경남도는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게 m²당 일년생 토종농작물은 120원, 다년생은 60원을 지급하며 농가당 최대 60만 원(다

무상으로 보급하는 토종씨앗이 품목과 물량에서 한정되어 있고 매년 같은 사람이 종자를 신청하고 보급 받는 반복현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군과 공감하는 시책사업 발굴이 미흡해 토종씨앗 증식포와 전시포 사업 등이 일부 중단되기도 하고 토종마을, 체험마을, 도시텃밭 등 지역 특성과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한 다양한 시책 발굴이 부족해 최근 경남도의 토종농산물 재배는 정체 상태 내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림 4-1]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출처: 경남신문 2016년 06월 14일자 보도 내용

이처럼 여러 요인으로 토종농산물의 재배가 정체 내지 감소하자 경남도는 최근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계획을 수립해 토종농산물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년생은 30만 원 이내)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가의 최소 재배면적도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이어야 한다.

9) 경남일보 2016년 6월 14일자 보도 내용,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계획(2016)

10)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계획(2016)과 <경남일보 2016년 7월 27일자 보도> 내용을 참고함.

첫째, 복원과 증식 등을 통한 토종 유전자원의 육성이다. 경상대학교 유전자원 및 종자기술 연구소, 한방약초연구소, 함양약초시험장 등 경남도내 대학교,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토종씨앗의 특성을 조사하고 DB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용한 형질의 토종자원을 활용하여 항노화, 기능성 우량품종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역 특화사업 등 6차 산업과도 연계해 토종농산물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둘째, 시군별 특화된 토종마을의 육성이다. 경남도는 전원·체험마을, 관광명소 등 경관이 좋고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는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1~2개의 토종마을을 지정해 토종 직불금 지원과 연계한 토종단지 조성, 토종축제 및 직거래장터 개설, 토종씨앗 무료 나눠주기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종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할 시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셋째, 토종종자 “씨앗도서관”의 운영이다. 경남도는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매년 13여 종의 토종농산물을 무상으로 보급해왔으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인이 신청·보급 받는 현상이 발생해 향후 씨앗도서관을 통해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텃밭 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 등 토종농산물에 관심이 많은 소규모 취미 농업인과 일반인도 쉽게 토종씨앗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경남여성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언니 네텃밭” 로컬푸드매장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토종씨앗 수집 전수조사이다. 현재 70~80대 농민들이 토종씨앗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토종씨앗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매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집 방법은 1차적으로 도→시·군→읍·면·동→리통장과 같이 행정계통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과 오지 산골 마을, 독농가 등은 토종 관련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토종씨앗은 농업자원관리원 종자은행에서 보관 및 증식 후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토종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종자은행과 토종씨앗 테마전시포 운영사업, 토종농산물 증식포 설치,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매년 10~11월), 로컬푸드 및 꾸러미 등을 활용한 토종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 국외 사례¹¹⁾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미국, 유럽, 호주 등 국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토종씨앗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국 등 서구 국가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 또한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 마찬가지로 주로 민간단체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나 운영 면에서 우리보다는 상당히 앞서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토종씨앗 보존 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미국

(1) 베이 에이리어 씨앗 교환 도서관(Bay Area Seed Interchange Library, BASIL)

가. 일반 현황

지 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설립시기: 2000년

설립자: 사샤 알트만 듀브릴(Sascha Altman Dubrul),
크리스토퍼 셰인(Christopher Shein)

단체형태: 비영리단체, 씨앗도서관

미션: “BASIL은 지역의 씨앗 품종들을 퍼트리고 기념하며, 씨앗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물학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일에 종사하는 단체입니다.”¹²⁾ “씨앗 채종과 식물 번식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은 날이 갈수록 더 소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공동체들 안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이고 생태적인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씨앗을 받는데 필요한 기술을 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11) 본 내용은 흥성씨앗도서관 문수영 실무자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인도, 호주의 씨앗도서관 및 토종씨앗 채종 관련 사례의 자료를 번역·정리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본 연구자가 발췌·정리한 것이다.

12) Christopher Shein and Julie Thompson(2013), *The Vegetable Gardener's Guide to Permaculture: Creating an Edible Ecosystem*(p. 248), Portland, OR, Timber Press.

통적인 농업지식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무엇이 필요할지 예측하면서 일해야 합니다.”¹³⁾

나. 활동 내용

BASIL 프로젝트는 다양한 원예가들을 한데 모아서 지역 씨앗 재배자들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은 농작물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지역 생태계에 적응시키는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¹⁴⁾ BASIL은 채소, 꽃, 허브의 씨앗을 수집해서 대중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 채종 강좌, 자료 제공, 숙련된 채종가의 1대 1 강습을 통해서 재배기술의 향상을 증진시키고 있다.¹⁵⁾

BASIL은 캘리포니아 에콜로지 센터(California Ecology Center)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책을 빌려주는 공립도서관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텃밭농부들은 채종한 씨앗의 일부를 계절 말에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필요한 씨앗들을 대여해갈 수 있다.¹⁶⁾

BASIL은 직접 재배한(homegrown) 건강한 채소, 꽃, 허브의 씨앗을 제공한다. 대여 가능한 씨앗들은 에콜로지 센터 내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서랍에 저장되어 있다. 서랍에 들어가지 않은 씨앗들은 라벨이 붙여져서 서랍 옆 선반 유리병에 담긴다. 씨앗은 종류에 따라서 채소, 허브, 콩과 식물, 꽃, 벼과 식물, 캘리포니아 토종 식물로 분류된다. 또한 채종 난이도를 기준으로 ‘매우 쉬움’, ‘쉬움’, ‘어려움’으로도 나뉜다.

씨앗을 빌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씨앗 대여 카드를 작성한 다음 자신에게 필요한 씨앗을 찾는다. 씨앗을 반납할 때는 BASIL에서 제공하는 씨앗 반납 봉투 스티커에 씨앗의 일반명, 종명, 채종한 날짜, 채종한 장소 등을 기입한다. BASIL에서 씨앗을 대여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 4-2] BASIL의 로고

(출처: BASIL 웹사이트)

13) Bay Area Seed Interchange Library. "WHY SAVE SEEDS?"(<http://ecologycenter.org/basil/>)

14) Bay Area Seed Interchange Library. "BASIL Seed Library"(<http://ecologycenter.org/basil/>)

15) 앞의 글.

16) BASIL Seed Library. "HOW DOES THE SEED LIBRARY WORK?"(<http://ecologycenter.org/basil/>)

빌려간 씨앗을 심고 재배해서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유전자 조작 씨앗이나 식물을 알면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안전한 씨앗 서약(Safe Seed Pledge)’을 한다.¹⁷⁾



[그림 4-3] BASIL의 씨앗 저장 서랍
(출처: Saving Our Seed 웹사이트)



[그림 4-4] BASIL의 씨앗 대여 서식
(출처: BASIL 웹사이트)

(2) 시드 세이버스 익스체인지(Seed Savers Exchange, SSE)

가. 일반 현황

지 역: 아이오와 주 데코라

설립시기: 1975년

설 립 자: 다이안 오토 윌리(Diane Ott Whealy), 켄트 윌리(Kent Whealy)

단체형태: 비영리시민단체

미 션: “우리는 씨앗과 식물들을 수집하고, 기르고, 나눔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위협에 처해 있는 미국의 정원과 농작물 자원을 보호합니다.”¹⁸⁾

17) BASIL Seed Lending Library Membership Information. “The Safe Seed Promise”

18) Seed Savers Exchange. “Mission”(http://www.seedsavers.org/mission)

나. 활동내용

SSE는 갱신(regeneration: 저장된 씨앗을 심고 재배해서 새로 채종한 씨앗으로 대체하는 것)과 배포, 그리고 씨앗 교환을 통해서 재래종과 자연적으로 수분된 식물 품종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민간 씨앗은행 중 하나이다.¹⁹⁾



[그림 4-5] SSE의 로고

(출처: SSE 웹사이트)

회원들의 씨앗 교환은 1975년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SSE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SSE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씨앗 교환은 전국에서 온 정원사들이 직접 재배한 씨앗들을 제공하는, 회원과 회원의 씨앗 물물교환이다.²⁰⁾ 13,000명이 넘는 수의 회원들이 씨앗 교환을 통해서 직접 기른 씨앗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²¹⁾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채종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씨앗 교환은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015년에는 교환 목록이 23,000개에 이르렀다.²²⁾

19) "Seed Savers Exchang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9 March, 2016.

20) SSE. "What is seed exchange?"(<https://exchange.seedsavers.org/page/about>)

21) SSE. "Sharing seeds."(<http://www.seedsavers.org/mission>)

22) 앞의 글.



[그림 4-6] SSE의 카탈로그
(출처: SSE 웹사이트)



[그림 4-7] Lillian Goldman 방문자 센터에서
판매하는 씨앗들
(출처: SSE 페이스북)



[그림 4-8] SSE가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재래종 토마토들
(출처: SSE 페이스북)

(3) 피마 카운티 씨앗도서관(Pima County Seed Library, PCSL)

가. 일반 현황

지 역: 애리조나 주 투손, 피마 카운티 공립도서관

설립시기: 2012년

설 립 자: 저스틴 헤르난데즈(Justine Hernandez)

단체형태: 공립도서관 내부의 씨앗도서관

- 미 선 : 1. 지역사회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시작
하게끔 격려한다.
2.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는 전통
이 지역사회에 다시 이어지도록 한다.
3. 지역사회에서 재배, 수확, 채종을 교
육한다.
4. 지역 보존 씨앗(community sustained
seed)을 만들어낸다.
5. 나눔과 풍요의 문화를 양성한다.²³⁾



[그림 4-9] PCSL의 로고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나. 활동 현황

피마 카운티 씨앗도서관(Pima County Seed Library, PCSL)은 사람들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자연 수분된 재래종 씨앗들을 보유하고 대여해주고 있다. PCSL은 사람들이 지역의 건조기후에 적응한 식물들을 재배해서 풍요롭고 유전적으로 다양한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피마 카운티 공립도서관의 회원 카드를 만든 사람들은 8개의 피마 카운티 도서관 분관들

23) PCSL. *Seed Library Borrow Brochure*(2015). Retrieved from https://pima.bibliocms.com/wp-content/uploads/sites/6/2015/05/seed-library-borrow-brochure_042015_final.pdf

중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방문해서 씨앗을 대여해갈 수 있다. 또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씨앗들 중 자신이 지금 빌려가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분관이 본관에 씨앗을 요청하도록 예약할 수 있다. 씨앗 검색 시스템은 도서 검색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작물종의 이름을 책 이름처럼 검색할 수 있다. 또 도서관은 2015년부터 계절별 씨앗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²⁴⁾



[그림 4-10] PCSL의 씨앗 관리법
(출처: PCSL 웹사이트)



[그림 4-11] 피마 카운티 공립도서관 내부에 있는 PCSL의 씨앗 저장 서랍
(출처: PCSL 웹사이트)

24) PCSL. "Fresh Seed Library news: find seeds by searching for the planting month." Pima Blogs. 15 December, 2015.

2) 캐나다: 시드 오브 다이버시티 캐나다(Seed of Diversity Canada, SoDC)

가. 일반 현황

지 역: 토론토

설립시기: 1984년

설 립 자: 캐나다 유기농업 협회

(Canadian Organic Growers)

단체형태: 자선단체

미 선: 1. 위험에 처한 재래종

농작물 품종들, 특히

캐나다 식물의 재배를 조사하고, 보존하고, 영속시키고, 연구하고, 장려한다.

2. 위험에 처한 농작물 품종들과 재래종 씨앗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
으로 재배하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교육한다.²⁵⁾



[그림 4-12] SoDC의 로고

(출처: SoDC 페이스북)

나.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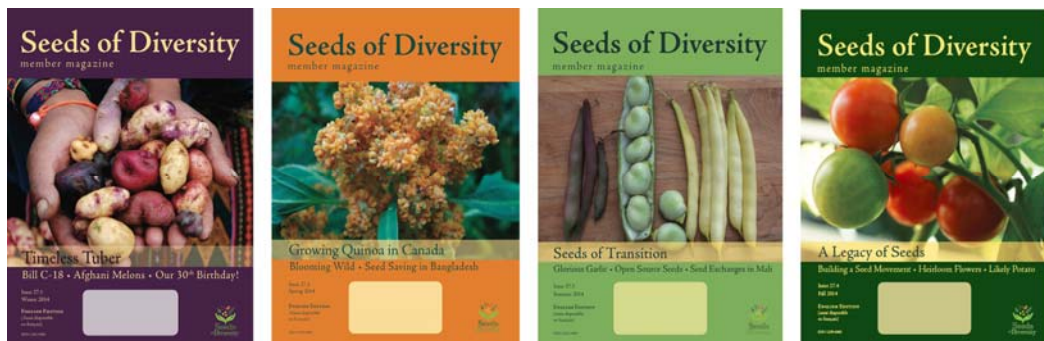
SoDC는 캐나다 유기농업 협회(Canadian Organic Growers)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1984년에 협회는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 상실에 대한 회의를 조직했다. 미국의 시드 세이버스 익스체인지를 설립한 켄트 윌리가 기조연설을 한 이 회의에서 캐나다의 농작물 자원을 구조하는 ‘재래종 씨앗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알렉스 카론(Alex Caron)이 담당했다. 프로그램이 중지된 지 2년째 되던 해인 1978년 말, 카론의 요청으로 유기농업 협회 소속 유기농 원예가이자 시드 세이버스의 일원이기도 했던 헤더 애플(Heather Apple)이 합류해서 프로그램을 재조직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1988년 시드 세이버스 익스체인지를 본보기로 삼은 풀뿌리 채종 조직으로 발전했다. 1989년에 재래종 씨앗 프로그램’ 가필드 웨스턴(W. Garfield Weston) 재단으로부터 5년 지원금을 받았다. 1995년에는 법인 조직이 되었으며, 영어이름을 ‘Seeds of Diversity’로 바꾸었다.²⁶⁾

25) SoDC. “Our Objectives”(https://www.seeds.ca/about/objectives)

26) “Seed of Diversity.”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1 June, 2016.

시드 오브 다이버시티 캐나다(Seed of Diversity Canada, SoDC)는 연간 유료 회원제로 운영된다. 매년 25달러를 내면 매년 1월에 온라인으로 씨앗 명단을 받아볼 수 있고, 40달러를 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다.

SoDC 프로젝트의 하나인 ‘캐나다 씨앗도서관’은 2,300품종 이상의 지역에 적합한 품종들과 희귀한 씨앗 품종들을 보유한 비영리 프로젝트다. 일반인들이 기증했거나 심각한 위협에 처한 품종, 그리고 작은 씨앗 상점에서 구입한 씨앗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씨앗도서관은 회원인 채종가들과 캐나다 재래종 씨앗 회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씨앗 보급보다는 주로 미래 세대의 원예가들과 농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씨앗을 받아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13] SoDC의 회원 계간지

(출처: <http://seeds.ca/magazine>)

3) 영국: 가든 오가닉의 재래종 씨앗도서관

(Garden Organic's Heritage Seed Library, HSL)

가. 일반 현황

지 역: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주 코번트리 시

단체형태: 자선단체

회원제도: 유료 회원제이다. 가든 오가닉(Garden Organic)의 회원은 한 해에 18파운드를 추가로 내면 가든 오가닉의 재래종 씨앗도서관



[그림 4-14] Garden Organic의 로고

(출처: theBigGive.org.uk)

(Garden Organic's Heritage Library, HSL) 회원이 될 수 있다. HSL의 회원들은 매년 12월에 씨앗 카탈로그를 받으며, 카탈로그에 실린 씨앗들 중 7종을 재배할 수 있다. 6종의 씨앗은 회원이 직접 선택하고, 7번째 씨앗은 HSL이 무작위로 보내준다.²⁷⁾

나. 활동 현황

가든 오가닉은 유기원예와 유기농업, 유기농 식품을 조사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영국의 유기원예 단체이다. HSL은 가든 오가닉에서 운영하는 씨앗도서관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채소 씨앗들을 보존하며, 회원들에게 수집한 종자들을 나눠준다.

HSL는 특정한 재배 환경에 적응된 희귀한 지역 품종, 수 세대에 걸쳐 채종해온 재래품종, 상업성이나 대중성의 부족 때문에 지난 십여 년 동안 일반적인 씨앗 카탈로그에서 제외되어 온 품종의 씨앗들을 수집한다. 현재 도서관은 약 800가지의 자연 수분된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품종들은 HSL 회원들이 기증한 것이거나, 씨앗 조사 등과 같은 HSL의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기증받은 것들이다. 또는 더 이상 그 품종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하는

27) Garden Organic HSL. "Heritage Seed Library Membership"
(<http://www.gardenorganic.org.uk/hsl?gclid=CJn-0rTY1M4CFY6SvQodlMgHdw>)

씨앗 회사들로부터 전달받기도 한다. 해마다 소장된 종자들 중 150여 종의 품종들이 HSL의 씨앗 카탈로그에 실리기 위해 선택된다.²⁸⁾ 일부 품종들은 가든 오가닉의 HSL팀이 ‘라이톤 오가닉 가든(Ryton Organic Gardens)’에서 재배한다. 또한 HSL은 ‘씨앗 수호자들(Seed Guardians)’을 상시 모집하는데, 이들은 재고가 얼마 없는 희귀 품종을 책임감을 가지고 재배하고, 채종해서 수를 불리고, 재배 과정과 특성을 기록하는 개인 자원봉사자들이다. 씨앗 지킴이들의 활동은 HSL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SL은 매년 40,000꾸러미 이상의 씨앗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중 50%정도는 씨앗 수호자들이 채종한 것들이다.²⁹⁾ HSL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180명가량의 씨앗 수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HSL은 회원들과 씨앗 수호자들을 위해 씨앗 채종의 기본 내용과 각 작물의 재배법, 교차수분을 막는 방법, 수확과 채종법 등이 실린 씨앗 채종 안내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초급, 중급 채종 강좌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씨앗 채종을 교육하고 있다.



[그림 4-15] HSL 운영방법
(출처: Garden Organic 웹사이트)



[그림 4-16] Garden Organic의 HSL팀
(출처: Garden Organic 웹사이트)

28) Garden Organic HSL. "How does the Heritage Seed Library work?"

(<http://www.gardenorganic.org.uk/hsl?gclid=CJn-0rTY1M4CFY6SvQodlMgHdw>)

29) Garden Organic HSL. "Seed guardians"(<http://www.gardenorganic.org.uk/seed-guardians>)

4) 호주: 시드 세이버스 네트워크 (The Seed Savers' Network, SSN)

가. 일반현황

지 역: 뉴스우스웨일스 주 바이런베이

설립시기: 1986년

설립자: 미카엘 팬톤(Michel Fanton),
주드 팬톤(Jude Fanton)

단체형태: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미션: 1. 씨앗을 영리적인 목적을 통해 사
고팔지 않으며 서로 교환한다.

2. 자연적으로 수분하는 식물

품종을 위한 정원을 보존한다.

3. 잡종이 아닌 식물 품종을 위한 씨앗은행을 운영한다.

4. 자연 수분하는 식물 품종의 번식을 위한 농업/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식물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과 자연 수분하는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 공립대학이나 다른 제도와 연계하여 위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³⁰⁾



[그림 4-17] SSN의 로고

(출처: Free Life Web)

나. 활동 현황

1986년, 미카엘 팬톤(Michel Fanton)과 주드 팬톤(Jude Fanton)이 설립한 SSN은 호주의 비영리단체로, 뉴사우스웨일스 주(New South Wales)의 바이런베이(Byron Bay)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원예가들과 농부들을 찾고, 호주 정원에서 대물림된 씨앗을 재분류하고 번식시켰으며, 전 세계 농민들 또한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³¹⁾ 현재 15,000명

30) SSN. "Aims" (<http://seedsavers.net/shop/home/about-seed-savers/aims/>)

31) "The Seed Savers' Network"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6 July, 2016.

이 넘는 사람들이 SSN에 참여하고 있다.³²⁾

SSN은 씨앗이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고유한 농업생물다양성의 소통과 발전을 추구한다. 즉, 국가 차원의 씨앗은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영구적인 냉동보존보다는 그 지역의 소농들과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³³⁾

SSN는 설립과 동시에 지역 씨앗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역 씨앗 네트워크 LSN을 조직하여 현재까지 호주 전역에 100여 개의 LSN를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에는 각 지역의 LSN 정보와 주소, 연락처, 회원 수가 공개되어 있다.

대부분의 LSN은 각각의 웹페이지와 씨앗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룹 구성원들의 정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모임을 진행한다. 그들은 지역 학교에서 텃밭정원을 만들거나 씨앗을 채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돕고, 지역 행사와 여러 매체를 통해 왜 우리가 지역씨앗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홍보한다.³⁴⁾

SSN은 매년 몇몇 인턴을 채용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경작하며, 퍼머컬처와 씨앗에 관련된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가이드가 안내하는 단체관광과 숙박시설을 제공한다.³⁵⁾

32) SSN. "Our Australian Achievements"

(<http://seedsavers.net/shop/home/about-seed-savers/our-australian-achievements/>)

33) "The Seed Savers' Network"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6 July, 2016.

34) SSN. "About Local Seed Networks"

35) 앞의 글.



[그림 4-18] SSN의 정원
(출처: SSN 페이스북)



[그림 4-19] SSN에서 기르는 호박 종류
(출처: SSN 페이스북)



[그림 4-20] SSN에서 기르는 옥수수
종류
(출처: SSN 페이스북)



[그림 4-21] SSN에서 기르는 콩 종류
(출처: SSN 페이스북)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토종씨앗 보존 활동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토종씨앗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봤고, 국외 사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로 민간단체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살펴봤다. 따라서 앞서 조사한 국내 타 지자체와 국외 민간단체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각 지자체마다 조례 등을 제정해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이른 2008년에 토종씨앗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된 토종작물 재배농가들에게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경남도의 토종씨앗 보급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토종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재배의 관성화 등의 원인으로 재배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둘째, 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최근 들어 토종씨앗 생산을 위한 증식포를 확대하고 있고 토종씨앗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립 토종종자식물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서(島嶼)가 있는 전남도의 경우에는 영광모시, 무안갯, 영암순무, 순천함초 등 각 지역에 산재한 토종작물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개발하고 이 가운데 약리 효과가 큰 작물에 대해서는 한약재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경우 토종작물에 관심과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충남도의 경우에는 최근 성환개구리참외 이외에는 이렇다할 토종작물 발굴 및 육성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의 경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씨앗도서관을 통해 토종씨앗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에콜로지센터에 위치한 베이 에이리어 씨앗 교환 도서관(약칭: BASIL)은 채소, 꽃, 허브 씨앗을 수집해서 대중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배기술도 보급하고 있으며, 13,000명의 회원으로 미국 내 가장 큰 민간 씨앗은행 중 하나인 시드 세이버스 익스체인지(약칭: SSE)는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씨앗을 회원들 간 교환을 하는데 교육 목록은 23,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캐나다의 시드 오브 다이버시티 캐나다

(약칭: SoDC)와 영국의 가든 오가닉의 재래종 씨앗도서관(약칭: HSL)은 각각 캐나다 유기농업협회와 영국의 유기원예단체에서 운영하는 씨앗도서관이며 호주의 시드 세이버스 네트워크(약칭: SSN)는 전 세계 농민 1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국가 차원의 씨앗은행에서 이뤄지는 반영구적인 냉동보존보다는 그 지역의 소농들과 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토종씨앗 보존 활동은 향후 토종씨앗 보존 활동과 관련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시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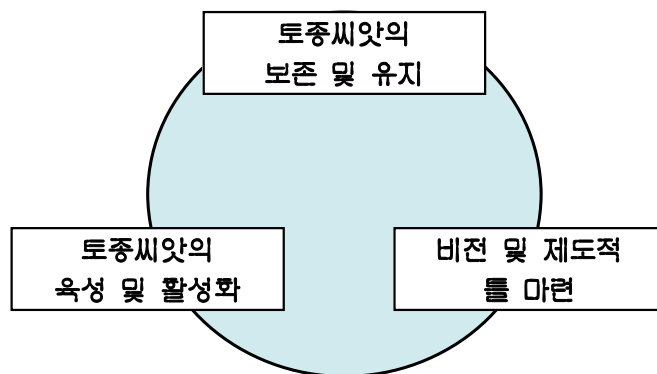
제5장 향후 정책 과제

1. 기본 방향

토종씨앗과 관련 충남도의 정책 과제는 다음 [그림 5-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오랜 동안 토착화된 지역의 토종씨앗을 어떻게 보존 및 유지할 것인가이다. 토종씨앗 그 자체를 지역에서 보존 및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토종씨앗을 활용한 농작물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이다. 토종씨앗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토종을 활용한 농가소득 방법, 지역사회 활성화 방법 등 토종씨앗을 활용해 가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종씨앗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 민과 관은 어떠한 비전과 제도적 틀을 세우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토종씨앗 보존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활용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토종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토종씨앗 보존을 위해서는 보존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림 5-1]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 과제

1) 토종씨앗 보존 및 유지에 관한 정책 과제

충남도에서 토종씨앗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토종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내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정리이다. 이는 토종씨앗 관련 정책의 기본이다. 토종씨앗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토종씨앗 관련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역 내 어떤 토종자원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토종자원을 수집해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 매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조사를 하고 이를 보존 및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도 토종씨앗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집한 토종자원에 대해 보존도 필요하지만 이를 잘 알릴 수 있는 도감 제작 등도 필요하다. 같은 토종이라도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담은 토종도감을 만든다면 지역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홍성군, 임실군 등 다른 지자체의 경험을 참고하고 씨드립 등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배우고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 토종자원의 보관에 관한 지원이다. 토종자원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수집한 토종자원을 보관하는 것은 더 어렵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기관과 홍성씨앗도서관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보관 및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이 체계적인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선 충남도는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경북도가 지역의 농업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업자원관리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조직과 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역의 토종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홍성씨앗도서관, 부여토종종사센터, 공주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와 개인 농장에서도 지역의 토종씨앗을 수집 및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개인농장을 연계한 토종씨앗 보존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중인 유전자원은 약 27만여 점이고 그중 토종씨앗(식량, 원예, 특용)은 약 52,182점이다. 이들 토종품종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및 증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의 토종 품종들은 지역에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부처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정을 받아 지역의 몇몇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역단위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필요시 중앙정부 혹은 국회에 법률 제정 및 수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종씨앗의 재배와 채종 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공주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등에서 재배와 채종에 관한 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인력 등의 여건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 가운데 토종농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충남도농업기술원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종관련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시설과 인력만으로 토종농사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홍성도서관 등 민간 활동단체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많은 경우 토종씨앗이 중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와 상품화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 받고 있다. 따라서 토종씨앗의 보존 못지않게 이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상품화 가능 토종씨앗과 그렇지 못한 토종씨앗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토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밀, 콩 등 일부 토종농산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토종농산물은 분리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종농산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토종농사는 재배의 어려움, 상품성 저하 등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어느 정도 규모화도 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수집상의 관심 밖에 있다. 토종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현재 경남도가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토종농산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경남도가 토종농작물 재배에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재배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경남도는 직불제의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지역개발과 연계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암튼 경남도의 경우는 그렇더라도 현재 충남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초기 단계에서 토종농작물을 확대할 획기적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지난 9월 충남도의회에서 제정한 [충남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은 빠진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 시 이러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촉진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산물에 대해 더 애정을 갖고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역마다 비슷한 형태의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은 없다. ‘locality(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뿌리가 있는 토종농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장의 전문매대에서 판매된다면 로컬푸드의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넷째, 교육 및 학교급식과 연계한 활동이 필요하다. 토종은 단순히 하나의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풍토를 간직한 자산이다. 또한 같은 품종이라도 토종농산물은 사람마다 그 재배방식이 다르고 그 사연이 다르다. 하나의 토종씨앗 안에 우리 시골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라니 담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토종씨앗과 농산물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이를 학교텃밭에 심어 재배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토종농산물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자주는 할 수 없지만 학교급식에도 한 달에 한번 등 일정한 기간을 두어 학생들에게도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지역의 농업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농산물로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의 농산물을 찾는다고 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지역의 농산물, 특히 토종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만들어주는 교육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 나눔 행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민이 생산한 토종씨앗은 상업적 목적으로는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부여의 토종씨앗축제 외에는 이렇다할 나눔 행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토종씨앗 나눔 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도의 최대 마을축제인 <고향마실페스티벌>에도 토종씨앗 나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토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확산해 토종씨앗과 농산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시경관 조성 등 토종농작물의 다양한 쓰임새 개발이다. 토종농산물은 음식으로써의 가치도 있지만 환경과 경관 개선에서도 훌륭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속 학교농 만들기사업에 버들벼 등 충남지역 토종벼를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과 도시텃밭연구소가 공주시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토종농산물 활용 텃밭 및 경관조성사업은 도시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토종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한 토종마을 조성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는 현재 많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장이 있다. 이들 마을들은 각기 지역적 특색을 가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종씨앗과 농작물을 테마로 한 전문 프로그램은 없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 농촌체험관광과 농촌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및 농산물을 테마로 한 생산, 경관, 가공, 체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농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토종씨앗과 토종농업의 주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비전 제시 및 제도적 틀 마련

이상과 같이 충남도에서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전 제시와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 기관별로 나누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각 시군 토종농사 농업인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토종종자네트워크 모임을 민관협력 협의체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토종씨앗 관련 사업은 먼저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실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충남도내에서 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관계 기관 담당자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이후 충남도가 토종씨앗 및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다. 충남도의회는 2016년 9월 9일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충북도, 제주특별자치시에 이어 여섯 번째로 토종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타 지자체의 조례에 비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수정 및 제안 내용이다.

[표 5-1] [충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수정·보완안

조례안	제안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충남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충남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한다) 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또한 “농업인 등”에는 농업 활동과 관련한 협동조합, 비정부기구(NGO), 비영리민간단체(NPO)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남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관련 시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 3.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수집, 관리, 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 3.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정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5.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의 위한 전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인원수, 위촉절차, 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보급 및 판매에 필요한 행정장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의 위한 전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인원수, 위촉절차, 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모범사업자 선정·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해당 생산업·가공업·유통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하	

“시책사업” 이다 한다)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그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시행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구체적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결과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 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도지사는 토종 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집하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모범사업자 및 시책사업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충청남도의 조례에는 토종농사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조항이 빠져있다. 따라서 향후 조례의 수정·보완 시에는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토종재배계획 제출) (*조항 번호는 임의대로 정한 것임. 이하 동일)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 재배를 통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농업인 등은 제10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 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①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 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13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결정)

①제11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토종농사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조항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 경우에는 토종농사를 재배하는 농민과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만들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직접지불제 대상 품목, 면적,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식품안전, 생물종다양성, 생태와 환경, 지역의 가치와 문화 복원,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농산물 등 많은 이유에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충남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1) 토종씨앗의 개념 및 가치 규명, 2) 충남도내 민·관 영역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3) 타 지자체 및 국외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 사례 분석, 4)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충남도 각 주체별 역할 및 정책 과제의 제시 등이다.

제2장에서는 토종씨앗 관련 선행 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토종씨앗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관련 문헌은 적은 상태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들어, 토종의 개념과 중요성, 토착지식, GMO, 종자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해 토종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헌을 분석했다. 또한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 및 육성하려는 정책(GSP사업 등)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정책(토종 관련 조례 제정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실제 충남도내에서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민 10명과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 단체 대표 5명에 대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했다. 인터뷰조사 대상 농민은 주로 부여, 공주, 논산, 청양, 홍성의 농민들이고 활동단체는 부여토종종자센터, 부여군여성농민회, 공주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홍성씨앗도서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등이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토종씨앗의 재배 현황, 토종농사를 짓는 이유, 활동단체의 설립 배경과 활동 현황, 토종농사의 어려움, 그리고 토종씨앗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이다. 이러한 인터뷰조사를 통

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충남도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전남도, 제주특별자치시, 괴산군 등이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도의 경우에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특히 경남도는 조례에 관한 시행 규칙까지 마련해 도의 보급대상 품종에 대해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토종씨앗과 관련한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북도와 전남도에서도 토종을 지역의 특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사례는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나누는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는지 알아봤다. 1975년에 설립된 미국 아이오와 주의 비영리시민단체 시드 세이버스 익스체인지(SSE)는 “우리는 씨앗과 식물들을 수집하고, 기르고, 나눔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위협에 처해있는 미국의 정원과 농작물 자원을 보호한다.”를 미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향후 씨앗도서관 등 많은 활동단체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충남도 차원의 토종씨앗 보존 방안에 관한 과제이고, 둘째는 토종씨앗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이고, 셋째는 이러한 보존과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제도적 틀 마련이다. 다행히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보완했다.

2. 결론

토종씨앗은 농업기술적 가치, 생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GMO식품의 위해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생태적으로도 안전하고 지역적으로도 고유한 문화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토종

씨앗과 농산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토종씨앗과 농산물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5장에서 제안을 했듯이 본 연구의 결론인 정책 과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제시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토종씨앗 보존과 유지에 관한 제안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충남도내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정리, 2)토종자원의 보관에 관한 지원, 3)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4)토종씨앗의 재배와 채종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이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상품화 가능 토종씨앗과 그렇지 못한 토종씨앗을 나누어 대응, 2)토종농산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3)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촉진 및 홍보, 4)교육 및 학교급식과 연계한 활동, 5)토종씨앗과 토종농산물 나눔 행사의 확대 및 지원, 6)도시경관 조성 및 토종농작물의 다양한 쓰임새 개발, 7)토종마을 육성 등 농촌마을개발사업과의 연계사업 개발 등이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비전 제시 및 제도적 틀 마련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현재 각 시군 토종농사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토종종자네트워크 모임을 민관협력 협의체로 개편한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3)충남도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 등이다.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연구 기간인 2016년 9월에 마련되었다. 하지만 토종농사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향후 미흡한 규정을 보완해 제도적 틀을 완비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적 한계이다. 2016년 4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토종씨앗의 파종, 성장, 수확 등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토종에 관한 연구도 적고 연구자도

이에 대한 연구를 처음하다 보니 연구의 방향,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을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조사대상도 충남도내 토종씨앗 재배농민 10명, 보존 활동 단체 5곳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토종씨앗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해 한두 곳의 면(面) 지역을 선정해 실제 농민들이 어떠한 토종씨앗을 보존 및 재배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조사는 주로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이 되어야 가능해 실행하지 못했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간단체와 연계해 토종씨앗 자원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공간적 한계이다. 인터뷰조사 대상지역이 홍성, 부여, 공주, 논산 등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본 연구가 충남도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조사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 사례가 많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본 연구자가 다른 지역 사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또한 강남도, 전남도 등 충남도 이외 타 지자체의 앞선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필요했으나 여러 어려움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얻는데 그쳤다. 이러한 한계와 아쉬움은 다음 기회에게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순희. 2014. “한국의 GMO 반대 운동과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사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등. 『GMO를 반대하고 토종씨앗을 지키는 세계농민들의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90-94.
- 김은진. 2016. 전북도 토종씨앗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김종덕. 2013. 생물다양성 위기와 슬로푸드운동의 대응. 경남대학교 인문논총 37: 49-71.
- 김효정. 2010. ‘토종씨앗지키기’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웅·최근진·소은희·고희중. 2016. 한국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육종과학지 48(1): 11-21.
- 신완식. 2015.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과 GSP사업의 역할. 『Plant Biotechnology』 42: 71~76.
- 신지연. 2016. “한국의 토종종자 지키기 활동”, 충남연구원.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한일 워크숍』 자료집(CNI 세미나 2016-006): 33-46.
- 윤영환. 2016. 충남 신품종 육성·보급 현황 및 현안 문제, 3농혁신대학 <종자·종묘산업 활성화 과정> 자료집. 충청남도.
- 이정로·백형진·최유미·이석영·이기안·정연주·김정곤·이명철. 2011. 최근 중국 종자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한국국제농업지 23(5): 552-559.
- 인원식. 2009. “토종의 중요성과 보존 활동”, 괴산인재양성학습센터·흙살림 『토종 기초과정』 자료집 3-27.
- 윤성희. 2009. “유기농업을 위한 토종종자의 활용 방안”, 괴산인재양성학습센터·흙살림. 『토종 기초과정』 자료집: 28-50.
- 정만철. 2016. “왜 지금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말하는가”, 충남연구원.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한일 워크숍』 자료집(CNI 세미나 2016-006): 79-88.
- 황경산. 2013. 젠더 불평등과 세계 식량 체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식량주권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HT, Park KW. 2013. Challenge for the seed industry leap, 「Agricultural policy focus」 No.46,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부 록

부록 1 토종씨앗 관련 인터뷰 조사표_재배 농민 / p.100

부록 2 토종씨앗 관련 인터뷰 조사표_활동단체 대표 / p.105

부록 3 토종씨앗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p.110

부록 1 : 토종씨앗 관련 인터뷰 조사표_재배 농민

토종씨앗 관련 인터뷰 조사표_재배 농민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자료는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실태 및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인터뷰 조사표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제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향후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2016. 7

♣ 문의: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73-26 Tel: 041-840-1206, E-mail: kcpark@cdi.re.kr

<응답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지역	

토종씨앗 개념 정의 및 생산 관련 질문입니다.

1. 지역 정착 형태는?

- ① 본래 농민 ② 귀농인 ③ 반농반x ④ 기타_____

2. 농사 경력은?

-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년 이상

2.1. 그 가운데 토종농사 경력은?

- ① 3년 이하 ② 3~5년 ③ 5년~10년 ④ 10년 이상

3. 전체 농사 면적은?

- ① 3마지기 이하 ② 3~5마지기 ③ 5~10마지기
④ 10~20마지기 ⑤ 20~50마지기 ⑥ 50마지기 이상

4. 그 가운데 토종씨앗 농사 면적은?

- ① 1마지기 이하 ② 3마지기 이하 ③ 3~5마지기
④ 5~10마지기 ⑤ 10~20마지기 ⑥ 20마지기 이상

5. 일반 농사와 토종농사의 비중은?

- ① 100% ② 70% 정도 ③ 30% 정도 ④ 10% 정도

6. 토종씨앗 재배 토지 형태는?

- ① 자경지 ② 임차농지 ③ 공동경작지 ④ 기타

7. 본인이 정의하는 토종씨앗에 대한 정의는?

- 재래종, 우리씨앗 등과의 차이점

☞ 토종씨앗의 정의:

8. 현재 토종씨앗의 재배 품종은?(많이 재배하는 순)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면적)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토종씨앗 구입 경로는?

- ① 주변 토종씨앗 농민 ②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
③ 정부 등 공공기관 ④ 기타

10. 토종농사 재배 방법은?

- ① 전통방식 ② 유기농방식 ③ 무농약이나 저농약 방식
④ 일반 농사방식

11. 토종씨앗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① 취미 삼아서 ②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는 뜻에서
③ 우리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④ 우리 것이 그냥 좋아서

☞ 구체적인 이유:

토종씨앗 재배 농산물 판매 및 인증 관련 질문입니다.

12. 토종씨앗 재배 농산물의 주요 판매 방식은?

- ① 개별적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판매 ②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판매
③ 전문 판매업체에 위탁해 판매 ④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
⑤ 여러 방법으로 판매 ⑥ 기타

13. 토종씨앗 재배 농산물의 판매 형태는?

- ① 원산물 그대로 ② 원산물+가공품 ③ 대부분 가공품으로 ④ 기타

14. 토종씨앗 재배 농산물 판매 시 브랜드 및 상표 유무는?

- ① 있다 ② 없다.

- 있는 경우 이름과 그 뜻: _____

15. 일반 농산물보다 토종씨앗 재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차이 없음 ② 0~10% ③ 10~30%
④ 30~50% ⑤ 50% 이상

16. 토종농산물 판매 시 인증제도의 필요성은?

-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 구체적인 이유:

17.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진청 등 정부기관(국립유전자원센터, 국립종자원 등)
- ②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 ③ 씨앗드림, 흙살림 등 민간 전문업체
- ④ 토종씨앗 재배 농민 자체 인증 ⑤ 기타_____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관련 질문입니다.

18.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은?

- ① 점차 확대될 것이다. ②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 ③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이유:

19. 토종씨앗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 ①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
- ② 토종씨앗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및 연구
- ③ 지역 내 토종씨앗 재배 및 보유 현황 조사
- ④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
- ⑤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 ⑥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의 토종씨앗 채종포 마련 및 보급

☞구체적인 이유:

20. 토종씨앗 보존과 확대 그리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 필요 혹은 불필요 이유:

21.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충청남도, 각 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충청남도:

-각 시군:

♣ 인터뷰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 토종씨앗 관련 인터뷰 조사표_활동단체 대표

토종씨앗 관련 인터뷰 조사표_활동단체 대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자료는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실태 및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토종씨앗 관련 활동단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인터뷰 조사표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제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향후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2016. 7

♣ 문의: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73-26 Tel: 041-840-1206, E-mail: kcpark@cdi.re.kr

<응답자>

성명		연락처	
직책		지역	

단체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1.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_____

2. 단체의 최초 결성 시기는 언제인지? _____년

① 2년 이내

② 5년 이내

③ 5~10년

④ 10년 이상

3. 단체 형태는?

- ① 임의단체 ② 법인(영농조합,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③ 기타

3.1. 현재 전담 사무실 직원 근무 여부?

- ① 있음 ② 없음

3.2. 법인이 아닌 경우 향후 준비하는 단체 형태는?

- ① 영농조합 ② 협동조합 ③ 사단법인 ④ 기타

4. 단체가 결성된 배경은?

- ① 회원들 간 취미 도모하기 위해서
② GMO 등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③ 우리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④ 토종농산물의 상업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⑤ 우리 것이 그냥 좋아서

☞ 구체적인 이유:

5. 현재 참여 회원 수는? () 명

- ① 5명 이내 ② 5~10명 ③ 11~20명 ④ 20명 이상

6. 참여 농민들의 구성은?

- ① 대부분 농민 ② 대부분 귀농인 ③ 반농반x ④ 기타

7. 최근 3년간 회원 변동은?

- ① 2013년____명 ② 2014년____명 ③ 2015년____명 ④ 2015년____명

8. 고정된 사무실 존재 여부

- ① 있음 ② 없음

8.1. 있다면 그 형태는?

- ① 개인 소유 건물 일부 사용 ② 단체에서 임대
③ 공공기관 사무실 임대

① 있음 ② 없음

① 1마지기 이하 ② 3마지기 이하 ③ 3~5마지기
④ 5~10마지기 ⑤ 10~20마지기 ⑥ 20마지기 이상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① 주변 토종씨앗 농민 ② 씨앗드림 등 외부 전문단체
③ 정부 등 공공기관 ④ 회원들 간 공유 ⑤ 기타

① 전통방식 ② 유기농방식 ③ 무농약이나 저농약 방식 ④ 일반 농사방식

① 개별적으로 판매 ② 주로 회원들 간 공동 판매
③ 개별+공동 판매 ④ 기타

① 원산물 그대로 ② 원산물+가공품
③ 대부분 가공품으로 ④ 기타

① 로컬푸드 ② 생협 ③ 농협
④ 일반 시장 ⑤ 기타

16. 토종씨앗 재배 농산물 판매 시 공동 브랜드 및 상표 유무는?

- ① 있다. ② 없다.

16.1. 있는 경우 이름과 그 뜻: _____

16.2. 없는 경우 향후 계획

- ① 공동브랜드를 만들겠다. ② 만들 계획 없다. ③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17. GMO 등 식품안전 관련 캠페인과 사회운동에 참여 여부?

- ① 적극 참여한다. ② 어느 정도 참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참여하지 않는다.

* 참여내용 _____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관련 질문입니다.

18. 토종씨앗의 향후 전망은?

- ① 점차 확대될 것이다. ②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③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19. 단체 회원의 향후 전망은?

- ① 점차 증가할 것이다. ②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③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0. 향후 여건이 가능할 시 귀 단체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 ① 판로 확보 ② 회원 간 유대 강화 및 조직의 내실화
③ 타 지역과의 연대 강화 ④ 지역 내 토종씨앗 조사
⑤ 가공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⑥ 토종씨앗 보급 및 대국민 홍보 활동
⑦ 기타 _____

☞구체적인 이유:

21. 토종씨앗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 ①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제정
- ② 토종씨앗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및 연구
- ③ 지역 내 토종씨앗 재배 및 보유 현황 조사
- ④ 토종씨앗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
- ⑤ 토종씨앗 재배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 ⑥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의 토종씨앗 채종포 마련 및 보급

☞ 구체적인 이유:

22. 토종씨앗 보존과 확대 그리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 필요 혹은 불필요 이유:

23. 토종씨앗 확대와 관련 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충청남도, 각 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 ② 충청남도:
- ③ 각 시군:

♣ 인터뷰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 토종씨앗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 경상남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4.] [경상남도조례 제3743호, 2012.10.4., 일부개정]

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과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2.10.04.>)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2.10.04.>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재배지역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토종재배계획 제출)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제7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8.19.>

제8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9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개정 2010.08.19.>)

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08.19.>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10.] [경상남도규칙 제3076호, 2014.10.10., 일부개정]

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로 보존·육성할 품종을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우선 지원지역)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향토사업 추진 지역
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농림사업 추진 지역
3. 그 밖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지역

제4조(재배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배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용도 및 관리방안
2.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면적과 수확시기
3. 향후 토종농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 등

제5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단가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한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9.〉

제6조(종자공급)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 농업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의 종자공급이 부족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재배관리)

시장·군수는 토종농산물로 재배신고 처리된 품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처리기간 50일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 농 계 획	재 품 종	재배 소재지				지목 (공부)	재배 면적 (㎡)	수확 시기	용도 및 관리방 안	연도별 생산계획 등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 · 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재배품종	재배소재지			재배면적 (㎡)	신청금액 (단위: 원)	담당공무원 확인
		읍면	리동	번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직접직불금 지급액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종 자 신 청 내 역	품 중		재배 소재지				재배 면적 (㎡)	종자 신청량 (kg)
			시군	읍면	리동	번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장 귀하

※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2. 강원도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강원도조례 제3797호, 2015.1.2., 일부개정]

강원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1.2.〉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9조(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

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 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11조(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53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3)~(49) 생략

3. 괴산군

괴산군 토종 농산물 및 종자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284호, 2016.7.1., 제정]

충청북도 괴산군(작물환경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및 국내에서 자생·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괴산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군수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토종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와 의무)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종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 및 토종작물 보유자에 대하여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7.1.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6-13 · 충청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실태 및 정책 과제

글쓴이 · 박경철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06(농촌 · 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54-4 03350

<http://www.cd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